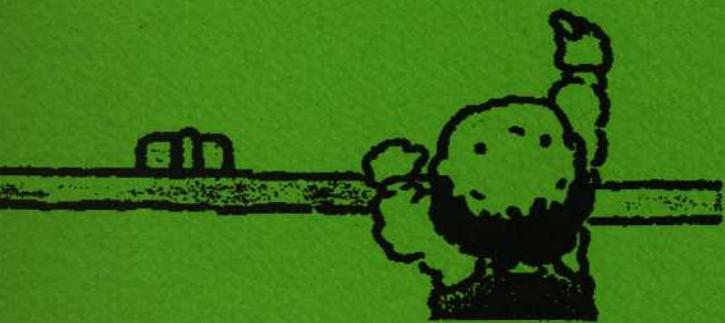


2008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 서울지부

어린이

인권 토론회



★ 때: 2008. 5. 02

★ 장소: 전교조 서울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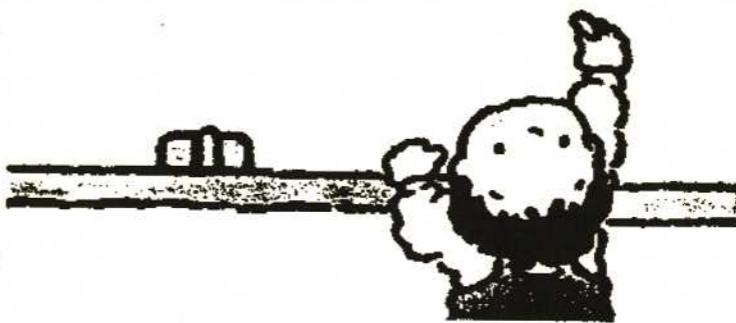
2008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 서울지부
어린이
인권 토론회

전교조 서울지부

2008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 서울지부

어린이

인권 토론회



★ 때: 2008. 5. 02

★ 장소: 전교조 서울지부



함께하는 단체

초등 교육과정 연구팀, 신은희 4 ~ 29

평화여성회, 박인혜 30 ~ 33

인권단체 '들' 이기규 34 ~ 51

특수반 교사, 이은미 52 ~ 62

초등학교교사, 장서문 63 ~ 76

가산사회복지관상담사, 유수경 77 ~ 88

아동복지담당 변호사, 김수정 89 ~ 99

성동지역 도깨비 공부방, 이수경 100 ~ 102

초등학교 어린이, 서혜지

공동육아와 공동체, 이송지 (별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신은희

4월 15일,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학교자율화조치”가 발표되었다. “자율”이라고 하면 좋은 말인데, 그 내용을 보면 “0교시, 우열반 편성, 사설기관 모의고사 허용, 방과후학교 사교육업체 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입시교육의 심각한 병폐를 겪으며, 교육의 기본과 학생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는 관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게다가 진행 과정을 보면 토목공사식으로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선 후 몇 달간 개점휴업상태로 있는 교과부가 터뜨린 첫 작품치고는 기가 막히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별집 쑤신 듯 불만이 터져 나오고, 학생들은 “우리도 밥 좀 먹고 잠 좀 자자”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반발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10월 대선 공약이 발표된 뒤부터 인터넷에서는 학생들의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심지어 시험을 수십번 본다더라는 과장된 이야기까지 떠돌았는데, 특이한 것은 이 대열에 초등학생들도 합류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데 반해 이번에는 유독 초등학생용 정책이 많아서였을까? 그보다는 이미 대입시 때문에 과도한 선행학습과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 영어공교육강화정책(오락가락한 영어몰입정책까지)이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생활을 얼마나 옥죄일지 직감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6학년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원성이 자자할 정도였으니

몇 년 전, 어린이날을 앞두고 백화점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발안마기라는 보도가 나왔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게 힘들어서라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스개소리로 치부될 정도이고, 공부가 힘들고 자유가 없어 자살을 한다는 아이들이 속출해도 사회는 요지부동이다. 공부가 너무 힘들고 노는 시간이 부족해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들과 싸우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하는데(07년 전교조 청주초등지회 보도자료), 교육현장에서는 더 어려운 교육과정을 내밀고 70년대식 폭력추방결의대회로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떠할까? 숨막히는 경쟁사회에서 일상의 피곤함을 호소하는 건 지금으로 끝나고, 경쟁의 단열매를 혼자 따먹을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어린시절을 불행하게 보낸 어른들이 저지르는 각종 사회범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주변사람이 불행한데 나만 행복한 사회는 있을 수 없다. 내일을 위해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오늘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아이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여러 뒷받침이 있어야겠지만, 학교교육과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왜냐하면 사회를 탓하기 전에 학습자중심, 수요자중심이라는 교육과정이 정작 학생과 교사들을 소외시키고, 날마다의 수업내용이 아이들을 숨막히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55년 교수요목기 이후 8번의 개정과정을 거쳤고, 내년부터 또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려고 한다. 개정시기마다 항상 나온 이야기가 배울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렵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부터는 교육내용의 양을 30%줄인다는 것을 최대성과로 내밀었는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어렵고 많아졌다고 하고, 특히 초등 1학년에서는 도저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 입학하기 전에 다 배워서 와도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전교조에서는 그 동안 여러 경로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교육환경의 개선을 전제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기초로 한 교육과정개정, 사회적 요구를 담은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주장해왔다. 이 글에서는 아동인권 측면에서 초등 교육과정의 문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여건의 문제를 고민해보려

고 한다.

1. 아동 인권 선언 정신과 학교 여건

아동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보내며 그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선언은 요청한다.

- 가.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 다.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 라.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 마.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 바.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 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 아.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 자.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차.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국가교육과정은 적어도 아동인권선언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녹아있어, 배우는 내용이나 교수학습 과정, 평가,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교육적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현장교사로서 문구만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못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인권선언의 내용들과 비교하면서, 학교교육과정이 어떤 인권침해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자.

1)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이 내용은 근대교육이 도입되면서 계속 이야기된 것이고, 우리 초등교육의 목표도 문구상으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부, 2007).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가. 몸과 마음이 균형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 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다.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 마.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

사회적으로 이야기될 때도 초등교육은 인성교육이 우선이고, 이런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교육이 이렇게 전인적이고 다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우리 나라 학교교육이 인지 내용과 단편적 지식 위주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체활동이 활발하고 온 몸의 감각이 여러 자극을 통해 발달하고 있는 시기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 조용히 있을 것을 강요당한다. 그 유는

첫째, 신체활동은 체육시간이나 한정되고, 그나마 활동 공간 부족과 교사들의 수업부담, 학급당 학생수 과다로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둘째, 교과내용이 활동을 강조하지만, 발달단계에 비해 어려운 내용이라 활

동으로 충분히 녹여내고 체화하기는 어렵다. 특히 단위시간당 공부할 양이 많아 활동으로 다 풀어내기도 어렵다. 감각적이고 활동적인 접근법에 대한 연구나 교수방법론도 부족하다. 그래서 활동은 있으나 개념정립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아동간 격차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셋째, 활동적으로 공부하려 해도 다인수학급에서 적용하려면 교사가 너무 힘들고, 소란해져 옆 반에 피해가 간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선정되는 내용들 자체가 논리적이고 아동발달단계에 적절하고 필수적인 내용보다는 대학학문영역 축소판에 그치고, 교과이기주의 때문에 잡다한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내용 하나하나를 신체, 정서, 도덕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 전체적 구조 속에서 이런 영역이 골고루 배치되고 내용 요소 간에 논리적인 정합성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로 연관성이 없거나 가치관이 충돌되는 내용도 들어있어 교사수준에서 재구성하기가 난감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도덕이나 바른생활에서 아동생활을 강조하고 습관을 중시해 직접 체험하는 내용을 많이 넣었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교과자체 존립을 위한 내용이 많다. 그래서 도덕 시간엔 도덕 내용만 강조하고, 신체활동이나 조작활동은 체육이나 실과시간에만 한정되기 쉽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조작이나 체험활동을 통해 도덕성이나 영성, 정신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 학자들의 연구나 교사들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도 교육과정이 한 차시마다 동기유발-목표제시-과정-내면화-수행 평가 체제로 짜여져 있는 것도 문제이다. 한 두줄로 제시된 내용이라도 추상화된 내용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을 40분(문서상)안에 충분히 익히고 자기가 잘 배웠는지 표현까지 해야 한다. 물론 교사가 꼭 일률적인 평가를 통해 측정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눈빛, 호응도, 간단한 평가)을 통해 확인을 하려 한다. 타일러식의 교수학습론이 휩쓸고 간지

꽤 오래되고 구성주의가 강조되지만, 아직까지도 학교현장은 이런 수업을 강조하고, 교육과정도 이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보면 이런 설정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허상인지를 알 수 있다. 수학의 경우 학생들의 셈하기 자동화 능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단순연산기능도 이를 배우는 학년보다는 다음 학년도에 가서 더 잘 풀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이재분외, 2001). 교육과정에서 나름 내용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며 결과가 눈에 잘 보이는 수학교과마저도 이러한데, 다른 교과들은 어떠할 것인가?

모든 교과가 다 이런 식으로 투입과 동시에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처치를 하는 방식이니 아이들이 수업시간마다 긴장하고 뭔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알게 모르게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교사수준에서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색다르게 수업을 해보려 해도 근본구조가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다인수학급에서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인마다 어떤 방식으로 내면화해 가는지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이니 교사는 학습지로나마 확인을 하려 한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아동발달단계에 맞춰 적정화되고, 단위시간당 학습량이 현실(다인수 학급, 대다수의 아이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 또 학습당 학생 수가 20명 수준으로 되거나, 보조교사제라도 도입하여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보장해야 한다(학교 규모도 3~400명 수준으로 축소되어야 학생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다). 이러한 때 수업과정에 학생들의 발달정도에 맞는 신체조작활동, 감각발달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신체활동 시간(야외활동시간)을 제도로 보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외 가정에서도 신체활동 부족으로 비만이 늘어가고 체력이 약화되는 현

상은 교육과정개정이나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대학평준화나 수능자격제 등
의 대학정책변화, 학별철폐 등의 사회적 제도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노동법에서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하듯이 아동보호 차원에서 학습시간
과 휴식시간, 신체활동 시간을 규정하여 과도한 사교육을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

2)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선생님, 배가 너무 고파요”

학교 끝나고 10시까지 학원에 시달리는 6학년 학급 아이가 한 말 때문에
동기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중간에 간식을 먹긴 하지만, 배가 고파 공부
도 안 되고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이 무슨 대명천지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
데?’ 하기에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

작년 서울지부 설문조사에서도 시험기간에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얼마나 악
화되는지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

이 와중에 0교시 허용을 포함한 학교자율화(일면 학교학원화정책)이 나오자 참다못한 학생들이 “우리도 밥 먹고 다니고 싶다. 잠도 자고 싶다”고 저항하기에 이르렀다. 속된 말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또 형편없는 급식문제까지) 잠도 못 자게 생겼다는 것이다.

3)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아이들은 놀이가 생활이고 생명이며 취미활동을 통해 자기의 다양한 소질
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에 지쳐 노는 시간이 없다
고 자살하기에 이르렀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놀이시간은 얼마나 될까? 작년에 놀이전문가 편해문 선
생님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초등학생은 적어도 밖에서 3시간은 놀아
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가?

초등교육과정모임은 그간 참교육과정을 고민하면서 아이들의 놀이시간 확

보가 공교육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인식하고 있다.

여가시간도 문제이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충분히 쉬려고 해도 좁은 교
실에서 불편하게 있고, 건물 안에 편안하게 쉴 공간이 아예 없다. 어느 곳
하나 학생들을 배려한 시설이 없는 것이다.

4) 인종, 종교, 피부색, 빈부 격차에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이 문구를 보니 영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세계화 시대 지구촌을 강조하
면서, 유독 우리 교육과정은 미국영어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료교사
의 말을 들으니 초등영어교재로 나온 CD의 발음은 미국 동부 텍사스주 백
인 남성 발음이라고 한다.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외국어교육을 해야 하는데
미국영어 중심인데다 원어민 발음만 강조하면서 실상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고 기타 다른 나라의 언어나 다른 지역 영어는 배제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
명박정권 들어 몰입교육, 영어전용수업, 영어공교육강화 등 점입가경이니 앞
으로 이런 경향은 더 심화될 것이다.

빈부격차 문제는 더 심각하다.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데, 이는 비단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 탓만이 아니다. 교육과정 내부
에도 문제가 있다. 바로 발달단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내용 수준이나 지나
치게 많은 교육내용의 양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만으로는 아이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어려운 교육과정이 사교육수요를 부추기는
것도 있고, 사교육의 질도 가정의 비용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지니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자꾸 아동의 수준차를
이야기하다 보니 사교육 받은 아이들 기준으로 교육내용 수준은 더욱 높아
지고 이 때때에 또 사교육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악화가 양화를 구
축한다고 해야 하나?). 수준별교육과정은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인권차별 요소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고, 매
차시 수업시간마다도 아이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검토되

어야 한다.

2. 발달단계와 맞지 않는 교육과정 - 선행학습 유발, 빈부격차 강화

앞에서 보았듯이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발달단계에 비해 어렵다고 하였는데, 특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표1>은 필자의 사례연구나 학위논문 등을 통해 나온 사례이다(김경신, 2007; 신은희, 2002; 조성실, 2006, 2008; 홍순희, 2008).

<표1> 7차 교육과정에서 학년별로 교사들이 어렵다고 보는 대표적 내용

학년	어려운 내용	비고
1학년	인물의 의견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글을 써 봅시다 소리와 모양을 흥내내는 말 구분하기 편지글 형식에 맞게 쓰기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봅시다(4는 6보다 작다 등)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알아보기 *1-가 분류하여 세어보기 단원 *1-가 덧셈식보고 뺄셈식 알아보기, 뺄셈식 보고 추상적 이해 안됨 덧셈식 알아보기이다. *1-나 세 수의 계산 *1-나 덧셈식보고 뺄셈식 알아보기, 뺄셈식 보고 덧셈식 알아보기*1-나 세수의 덧셈	생각, 의견 모두 추상적인 개념(6차 4학년 수준)
	- 가역적 사고 어려움	
	- 구체적 조작기라 역연산관계	
	추상적 이해 안됨	
	- 4학년의 자연수의 혼합계산과 중복	
	- 수식보다는 활동으로 해야 함	
2학년	가르키는 말 찾기 *2-가 뛰어세기 *2-가 시간 계산 *2-가 세수의 계산 *2-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과 뺄셈하기, 세수의 덧셈과 뺄셈 *2-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 뺄셈하고 설명하기 (고시안에서 반영) *2-나 쌓기 나무의 입면, 옆면, 윗면 그리기 *2-나 세 수의 계산 *2-나 문제 푸는 방법 찾기 단원	- 문장전체를 가르치는 지시어 도 있음 - 수의 규칙성을 보지 못함. 2학기에 다뤄도 잘 모를 내용 - 수의 연속량을 발달단계상 이해못함 - 4학년의 자연수의 혼합계산과 중복 - 입체를 보고 평면을 그리는 활동은 2학년 아이의 학습 발달에 맞지 않아 어렵다. - 관련단원과 분리되어 오히려 아이들이 어려워함
	*3-나 6의 3분의 1을 알아봅시다.	-비율의 개념으로 모두 어려

4학년	*3-나 문제 푸는 방법 찾기 단원 세 수의 계산 두 자리수×두 자리수 계산	워함 - 관련단원과 분리되어 오히려 아이들이 어려워함 - 3학년 단계에 어려움
	사회과목 전반적으로 어려움	과목 정체성 모호, 여러 영역 단순통합, 용어도 어려움,
	과학-달의 위치 변화, 공기의 이동 현상	- 달의 모양과 이름 어려움, - 실험과 개념의 간극 크고 추상적 개념 이해 어려움
	*4-가 큰 수에서 억, 조까지 수를 자세히 학습하지 않고, 자리값, 자리 읽기 정도로 줄인다. *4-가 부분은 전체의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내기 *4-나 두 양을 비교하여 분수로 나타내기 *4-나 수직과 평행에서 동위각, 엇각의 개념과 구하기(용어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4학년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 비율에 해당하여 6학년과 연관
5학년	교과 내용 양이 너무 많음 사회교과는 어려운 경제개념 때문에 한문파외가 필요할 정도	*4,5,6학년은 내용의 적절성의 문제보다 학습량이 많아서 반드시 축소해야 한다.
6학년	*5-나 도형의 넓이 단원에서 복합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 역사 내용 너무 압축적이고 양이 많아 암기식이 됨	

1) 1학년 교육과정의 문제

이 중 특히 1학년 사례는 심각하다. 초등학교 1학년은 공교육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발달단계를 토대로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하고, 모국어교육은 어떻게 시작하여 어디까지 발달해 가야 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국어의 경우 아동의 어휘량 발달이나 아동어휘의 특징 등을 배려하기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체계와 10학년 국어도달목표를 기준으로 무 자르듯이 교육내용을 분배하였다. 그 결과 1학년 내용이 6차 때의 3, 4학년에서나 나올 듯한 것이 버젓이

나오고, 때론 교사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면서도 7차 개정 초기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우려에 대해 1학년 내용은 한글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들어와서도 3, 4월 두 달만 배우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는 안이한 발언을 했다(2001년 EBS라디오, 생방송 부모). 하지만 실제로는 한글을 다 떼고 독서교육까지 받아야 알만한 내용으로 짜여지고 한글교육기간이 너무 짧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받고 오고 유치원들은 학부모의 요구에 시달려야 했다. 교육과정 자체가 사교육유발요소를 안고 있는 셈이다.

또, 유치원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으로 변동이 없어 국가교육과정간에 격차도 존재한다. 실제로 연구 결과 유치원교육과정에 비해 1학년 국어의 읽기, 쓰기가 지나치게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박순경, 2004). 1학년 교사의 90%가 국어과목이 어렵다는 대답이 나올 정도이다.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유치원 공교육만 받고 초등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시작부터 부진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국가교육과정안에 이런 격차가 있고, 시작단계부터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그간 이에 대한 연구나 보완책이 없이 아이들만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겪었을 심리적 상처, 자존감 훼손, 어려운 내용 때문에 저해되는 발달과정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기의 상처가 평생이 살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빨리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1학년에서 국어는 국어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다른 교과학습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 사실 국어라는 과목보다는 모국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의 생활과 학교생활, 앞으로의 국어생활을 위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관점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조적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우리 교육의 구조적 문제나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구조적 원인이 있다.

우리 나라 교육은 학생이 성인이 되어서 뚜렷한 가치관에 의해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는지 보다는 학벌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해서 급별로 완결된 교육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러다보니 가장 중요한 기초인 유초등교육은 아이들의 발달가능성과 필수적인 교육적 배려에 비해 형편없는 취급을 받고 있다.

근대교육이 도입된 지 50여년이 지났건만 교사양성과정에 대한 법적 규정 하나 제대로 없고, 특히 초등교육은 정책적 실수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무원칙한 임용정책으로 해결하고 있다. 급별교육의 전문성이나 정체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들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구조적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육과정 개발 전담 기구가 없다.

6차까지는 초등개발기구가 따로 있었지만, 7차교육과정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10개 교과) 체제로 되면서 교과별로 만든 내용을 조합하고 있다. 개발주체는 주로 중등중심이고 학문적 내용을 초등교사들에게 재주껏 쉽게 풀어쓰라고만 주문하였다. 이러다 보니 초등학생들의 발달단계나 학년별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졌다. 초등교사들의 교과통합적 관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개정과정에서 교육과정 결손도 생겨났다. 6차와 7차의 내용수준이 달라지는데, 연차적으로 바뀌다 보니 배워야 할 내용을 못 배우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6차로 1학년, 7차로 2학년을 가르치면서 교육내용이 상향조정되어 아이들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새 개정안도 보면 현재 초3학년이 역사내용을 전혀 못 배우고 중학교에 올라간다. 사회교과에서 역사 내용을 6학년에서 5학년으로 모두 내려놓았기 때문이다(발달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개발단계부터 이런 문제를 고려하고 운영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이런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초등교사들이 해마다 학년이 바뀌고 여러 교과를 가르치다 보니 교사수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둘째, 교육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아졌다.

7차교육과정이 교육내용 30% 감축을 내세워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교과개발단계에서 여전히 단편지식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단원만 줄여 1차시당 내용은 압축되어 더 어려워졌다. 교사의 노동강도나 학생의 학습노동강도가 다 심화된 것이다. 월2회 시행되는 주5일 수업도 학습양이 조절되지 않아 평일의 수업부담은 더 커졌다.

게다가 심화보충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모든 학생이 심화단계까지 공부해야 하므로 양과 수준의 적절화는 실패했다. 내용이 어려우니 사교육은 더 활개를 치게 된다(7차 시행 후 학원수강율은 더 높아졌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

여기에도다가 어려운 내용을 활동으로 풀어놓으니 수업은 산만하고 학생들이 체화하는 내용은 줄어든 느낌이다. 일명 나무는 보되 숲은 볼 수 없는 구조이다.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이 획일화되고 초등은 교육양만 늘었다.

외국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은 교사를 통해 구현된다. 국가는 대강의 내용과 가이드라인, 핵심적 내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교사가 지역, 학교, 학생 수준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하고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교단위로 교사들의 협력과 연계가 이뤄지고,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은 국가가 교과편제표와 시간, 차시별 평가 방법까지 제시하여 교사는 단순기능적으로 전락하였다. 게다가 어려워진 내용을 토대로 학생수준을 나눠 수준별로 교육을 한다며 결국 우열반을 만들어놓았다.

교육내용의 타당성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려놓고,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성장가능성을 차단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단편지식 중심의 내용을 단순분절한 선택교육과정은 결국 입시에 유리한 교과로 편중되어 교육을 획일화시켰다.

초등의 경우는 학생간 위화감 때문에 학급내 이동을 안하지만, 수준구분도 애매한 상태에서 결국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므로 어려운 내용이 많아지고 수업양만 늘어난 셈이다.

정말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내면화하고 소질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을 주고 교육내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또 교육과정을 지식내용과 문화예술교육이 균형을 이루게 하고, 적정한 내용을 학생발달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개편해야 한다.

넷째, 수행평가와 일제고사의 병행으로 학생 부담만 커졌다.

7차교육과정은 수행평가를 내세웠지만 초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면서 문제지시장을 부활시켰다. 이후 일부 학교나 시도에서 야금야금 일제고사를 보기 시작하더니,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기야 시도교육감에게 학업성취도 평가권을 넘겨주었다. 그 결과가 올해 전국적인 중1 진단평가와 초등학교 4-5학년 기본학습평가로 이어진 것이다.

교육내용의 문제에서 보듯이 어려운 개념을 활동으로 풀어놓고 다양하게 해석하라 하면서 수행평가를 하고, 일제고사에서는 또 정답을 요구한다. 배우는 과정과 결과가 배치되고, 가르친 사람이 평가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의 연속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나 학생이나 해야 할 일만 많아지고 교육주체들의 인간관계는 공동화되고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 개발진에 아동, 청소년 발달전문가가 없고 현장의견수렴이 배제된다.

교육과정 개발진에는 교과전문가나 일부 교육학자들이 들어가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아동, 청소년 발달전문가가 전무하다. 그러니 교과내용 위계

성만 따지고, 학문적 내용이 정선되지 않고 아무 학년에나 마구잡이로 넣어진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것인가? 발도르프 교육학에서는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무리한 내용을 배우면 아동이 신체적 병을 앓을 수 있고 그 피해가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발달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발달수준에 맞춰 어떻게 엮어나가야 할 것인지 정도는 고민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의견만 들었더라도 이런 교육과정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발달단계에 맞춰 필수적인 내용, 성장특성에 맞는 통합적 교과 구조,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등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영어 교과의 문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면 97년부터 도입된 영어교육의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오히려 사교육열풍은 유치원을 거쳐 태아까지 내려가고 있다. 원어민 발음을 해야 한다고 설소대수술을 하는 비인간적 학대도 일어났다. 학부모들의 대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어이다.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고학년에 가면 스스로 영어포기이라고 자조하고 있다.

사실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과는 단순히 교과 한 개가 더해지는 꼴이 아니라 초등교육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아무리 내용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다른 교과의 경우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영어의 성격은 다르다.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문화자본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양도 다른 교과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었다.

또 문화 정체성의 혼란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글을 익히고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 기능을 익혀야 하는데, 우리 문화와 전혀 다

른 영어를 배우다 보니 자아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글을 완전히 익혀야 영어도 잘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데 영어 도입 이후 국어 실력은 더 낮아지고 있다. 영어스트레스에 이도 저도 못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가끔 왜 우리가 영어를 꼭 배워야 하느냐는 아이들의 항변이나 한글을 써서 너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일 때 교사로서 씁쓸한 기분이 들고 이런 아이들의 고통에 손을 쓸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자괴감을 갖게 된다.

게다가 최근 쏟아지는 각종 영어교육정책은 과연 어느 나라 정책인지부터 의심스럽고,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저항할 정도이다.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가지게 하는 초등 영어 교육목표에 비춰볼 때 영어교육은 이미 실패했고, 교육격차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소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일제고사를 비롯한 평가 체제의 문제

-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엄마, 영어 시험보는 데 옆에 앉은 애가 재채기를 해서 듣기 문제를 못들어 1문제 틀렸어요. 그리고 6일 날 영어에서 2문제 틀렸는데, 내가 열반이래요.”

얼마 전 중1 진단평가에 대해 이야기하다 어느 선생님의 딸 이야기며 들었다. 순간 농사를 투기에 비유하던 윤구병 선생님의 『잡초는 없다』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농산물 수입이 많아지고 수요예측이 안되다 보니 투기하는 심정으로 농작물을 심고, 어느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덕에 값을 잘 받으니 은연중에 어디 사건 안 터지나 기대하는 심리가 생겨날 정도라는 것이다. 10년 만에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1 아이들이 전국 일제고사를 치루고 그 성적이 공개되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아이들은 어떤 환경과 문화에 접하게 될 것인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간 초중등학교에 이런 일제고사나 성적공개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대입시

위주 교육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소외당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성장이 저해될 정도이다. 그런데, 중학교라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시험을 통해 아이들을 진단하고(사실은 재단하고) 초등학교에서도 학기 초에 전국적인 시험을 통해 아이들을 걸러내고 있다. 과연 이 일제고사나 일상적인 교육평가의 문제는 무엇인가?

1) 중1 진단평가의 문제

이번 시험을 주도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시험의 목적이 학생들의 부족한 실력이 무엇인지 알고 교사가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학생 진단이 한 번의 평가로 가능하기는커녕, 오히려 학생을 재단하고 잠재적 능력이나 가능성은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 교사들 간에는 아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까봐 전학년도 생활기록부를 일부러 안보는 문화도 있다. 시험만 본다면 긴장하여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다.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시험제도가 불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한 요인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 진단평가의 문제는 무엇일까?

전교조 서울지부는 아이들을 가르친 초등교사들이 시험지를 분석하여 이번 진단평가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진단하였다(서울지부 초등위원회, 2008).

교육학 상식 무시한 진단평가

- 대부분 문항이 단순지식 이해에 치우쳐
- 5지선다 문항으로 다양한 평가 어려워
- 교육청, 이원목적분류표도 비공개로 쉬쉬

무늬는 '진단평가', 실제는 '서열화 위한 일제고사'

- 선다형 문항은 진단평가에 부적합
- 미래 가능성보다 현재 성적으로 줄 세우기
- 시도 간 학력경쟁 불붙여 일부교育청 편법 난무

과목별 문제 분석(현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블룸의 이원목적분류표 이용)

- 결국 시험결과를 보면 종합적인 능력에 대한 진단은 하지 못하고 단순지식내용에 대한 것만 이루어졌으며, 초등교과교육목표와 위배되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는 사교육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도 많았다(<자료1> 참고). 이는 진단자체를 잘못하였다는 것이며, 역으로 전국적 일제고사는 결코 진단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시험결과를 공개하여 이미 예상되었던 지역격차, 소득격차, 사교육여하에 따른 학생격차를 확인시켜주고, 모든 교육주체를 묻지마 경쟁으로 밀어 넣었다.

2) 전국단위일제고사인 진단평가가 초등교육에 주는 영향

이외에도 이번 진단평가는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초등교육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몇 가지를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학습 노동 강도 심화로 정상발육 저해
가뜩이나 시험, 어려운 교육내용, 학원수업으로 초등학생들도 밤10시까지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번 진단평가는 학습노동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정상적이고 균형 있는 발달은 더 요원한 일이 되고, 학원순례에 따른 학생들의 무기력증도 심화될 것이다.

사실 모든 일에 의욕적이고 생기발랄할 것 같은 초등학생들이 지친지는 꽤 오래되었다. 그래도 결과비교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이전과 질적으로 달라진다. 점수를 1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 경쟁에 학교가 뛰어들었으니 학생들은 더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둘째, 문제대비 수업으로 초등교육의 획일화 가능성

전국적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교사들은 앞으로 주변으로부터 시험대비수업에 시달릴 수 있다. 이미 일제고사가 도입되기 전부터 많은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현상도 일부 생겨

났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것과 달리 결과중심 학습을 하게 되고, 학생발달에 필수적인 균형있는 교육을 하기 어렵다. 발달단계에 맞춰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초등교육의 짙을 죽이는 셈이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 담임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던 수업이나 학급운영이 시험진도 때문에 획일화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창의성, 다양성, 자기주도성을 강조한다는 현행 교육과정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셋째, 교사와 학생의 유대관계 손상

교육은 모름지기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평가가 전면화되면 교사-학생관계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시험지가 교사학생 사이를 가로 막는 것이다. 전에는 수행평가상황과 지필평가 내용에 실망을 해도 ‘아, 재는 이 부분은 이렇지만 저 부분은 저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시험을 보면 점수 하나로 판단을 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시험점수로 교육 성패가 결정되는 셈이다.

3) 학생과 교사 관계를 증진시키는 진단활동

첫째, 학생 진단은 상담과 교육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그건 바로 적절한 학급규모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상담과 교육활동을 통해 해야 한다. 핀란드 유치원에 갔는데,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면 원장이 책임지고 4주간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시당국과 협의하여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우리 학교들의 3월은 어떠한가? 아이들과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하는 시간은 없이 각종 행정서류에 교실환경꾸미기, 학부

모총회 들로 아동진단이나 교재연구는 뒷전이다. 수업은 해야겠고 그러다보면 몇 아이 시범으로 잡아 1년을 편하게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전수한다. 학생인권이 근본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상담시간을 교육활동시간내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기시작을 여유 있게 하는 방안,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는 가르치는 교사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진단이 꼭 필요하다면, 이는 가르치는 교사가 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이 절대평가항목까지 제시하는 상황에서 학급이나 가르치는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도해나갈지는 교사의 전문성, 자율성에 달려있다.

셋째, 평가방법 개선보다 교육내용 양과 수준 적정화로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흥미도를 길러야 한다.

우리 나라가 PISA평가에서 점수는 높지만, 교과목에 대한 흥미나 정의적 태도는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쟁과 선형학습에서 교육잠재력은 다 훼손당해 우리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우선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넷째, 평가관점의 전환 - 배운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잠재적 능력(근접발달대)을 확대시키는 평가

지금 평가는 단순하게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치중되어 있다. 비고 츠키는 이런 내용을 비판하면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협력관계를 통해 잠재적 능력을 배양하고, 학습을 통해 발달을 촉진하려고 하였다.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쏟는 노력과 비용은 낭비이다. 근접발달대를 촉진하는 새로운 평가문화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5.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공교육제도는 부르조아가 체제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어린 아이들을 공장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런 공교육안에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정의 이름으로 상처받고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인권유린을 당하는 상황이다. 공교육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교조는 지난 20여년 간 입사교육 철폐와 함께 다양한 교과모임과 주제모임을 통해 대안적 시도를 해 왔다. 최근에는 대안교육과정, 대안교과서 연구뿐 아니라 공교육안에서 슬기롭게 해결해가는 국제적 사례(핀란드의 교육이나 학생의 자발성이 살아 숨쉬는 프레네 교육)도 연구하고 연대하면서 고민을 확장해가고 있다. 그간의 고민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신은희, 2008).

1. 입시와 사회 개혁 -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는 교육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타고난 소질을 충분히 계발하고 사회 어디에서나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사회와 교육제도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학생 개개인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소수를 선발하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1) 학교서열화 철폐 - 학벌철폐(학력간, 학벌간, 직종간 임금격차와 차별 해소)
 - 2) 입시문제 해결 - 고교와 대학평준화, 수능 자격고사화
 - 3) 대입 종속 해결 - 급별 완결 구조 교육과정
- 학교에서 학생의 개성을 마음껏 살려줄 수 있음

4) 무상 교육 실현 - 소득격차 상관없이 양질의 공교육 받아야 함

2. 교육과정 개혁 -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수정고시

교육과정의 기초를 아동과 청소년 발달단계에 맞춰 재구성하고, 사회를 살아가는 한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나 전망(생태, 인권, 노동, 평화 등)을 학교 시스템안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혁이 필요하다.

- 1) 국가교육과정 대강화 - 학교의 다양성, 교사 자율성, 학생 창의성 발현
- 2) 완전한 주5일제와 수업시수 축소
- 3) 급별완결구조를 갖는 교육과정 - 입시종속구조를 벗어나 급별 목표와 정체성을 살린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의 오늘이 행복하도록 해야 한다.
- 4) 아동 청소년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과정 -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 보육, 생활리듬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주창하는 선진 교육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8~10시간 수면 보장
- 적절한 학습노동시간 설정과 연령대별 필수 놀이 시간 확보(학교, 지자체 책임 지도);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보호차원으로 학원수강 법적규제
- 발달단계와 안전성을 고려한 학교환경, 학교교구와 학습준비물
- 5)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와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구성하여 학교교육속에서 평생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문화, 인문 소양을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6) 교육내용 축소, 수준 적정화 - 학생 수준 차 해결의 근본적 대안
- 7) 문화예술교육 정상화 - 문화가 국가경쟁력, 기능이 아니라 관점 중심
- 8) 공교육 급간 교육공백 해소(예 : 유치원-1학년 국어), 지역간 격차 해

소

9) 교사양성과 임용 구조 개혁 : 양성과정 법적 규정 마련, 급별 특성 맞춘 교육내용과 교육실습 강화, 교육적 임용방법 모색

10) 잡무 철폐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 - 교육정상화의 전제조건이며, 존폐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 살리는 지름길이다.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외국처럼 인간적인 규모의 학교(3-400명)로 전환하는 것도 학생은 관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학교는 생활과 지역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

3. 협력교육, 공동체교육 - 핀란드를 배워라

동료를 잠재적 경쟁자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인권침해는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1) 전국적 일제고사 철폐

2) 교사들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게 하는 교육 - 교사평가로 아이들을 편애하게 만드는 구조 철폐

3) 공부 흥미와 동기를 높여주는 교육 : 피사평가를 봐도 현재 점수는 높으나 흥미도는 최하, 잠재적 국가경쟁력 유실

4) 협력학습, 감성교육, 통합교육으로 미래사회형 인간 육성

5) 수준별 수업, 편가르기 교육 철폐 : 우수한 아이들도 보통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걸 배운다는 핀란드의 교훈

아동인권에 대해 그 내용을 알고 의식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권침해 동조나 방조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의 개혁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안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형성된 내용이 중심인데, 중요한 것은 이걸 실현하기 위한 세력간 연대와 구체적인 정책 생산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우리 교육과 사회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앞에서 고민한 모든 교육적 논의를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전국적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광풍 속에서 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학부모, 교사들)이 비애감을 느끼고

성적경쟁의 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2학기에도 줄줄이 전국적 시험(학업성취도의 명목으로)이 계획되어 있다. 앞으로 교육주체들의 연대와 치열한 투쟁 여하에 따라 우리 앞에 펼쳐질 날들은 변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모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료1>

1. 국어과 평가 - 읽기와 지식 영역 편중

<Bloom의 '인지적 교육목표 분류학'에 의한 국어과 이원분류표>

인지능력수준 평가영역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비율
듣기							0%
말하기		12					4%
읽기	18	3,5,6,7,9,10,11,14,15,17,19,20 ,21,22,23,25		4			72%
쓰기		16					4%
국어지식	1,2,13	24					16%
문학		8					4%
비율	16%	80%	4%				

2.. 사회과 평가 - 지식 이해 편중

<평가영역에 따른 사회과 이원목적분류표>

평가영역 단원	학 기	지식·이해	기능	가치·태도	비 율
1. 우리 민족과 국가의 성립	1 학 기	1, 2, 3, 4, 5, 6			24%
2. 근대사회로 가는 길		7, 8, 9			12%
3. 대한민국의 발전		10, 11			8%
1.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2 학 기	12, 13, 14, 15, 16, 18,		17	28%
2. 함께 살아가는 세계		19, 20, 21, 25	22		20%

3.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을	23	24		8%
비율	88%	8%	4%	

3. 수학과 평가 분석-비교적 영역 고르나 핵심능력인 정의적영역 평가엔 무리

<평가영역에 따른 수학과 이원목적분류표>

평가영역 영역	지식·개념	계산	문제해결력	관심·흥미	비율
수와 연산	1,2,5	11,14			20%
도형	6,10,16, 18,22	13,19			28%
측정		21,24	3		12%
확률과 통계	4	9	15		12%
문자와 식		25	7,17,23		16%
규칙성과 함수		8,20	12		12%
비율	36%	40%	24%		100%

* 위의 이원목적분류표에서 평가영역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pp.236~237에서 추출한 것이다.

4. 과학과 평가 분석-과학지식 영역 편중

<평가영역에 따른 과학과 이원목적분류표>

평가영역 분야	과학지식			과학탐구			과학태도		비율
	기억	이해	적용	문제발견 및 해결방안탐색	자료수집	자료해석 및 일반화	실험 기구조작 및 수집, 사육재배	과학에 대한 태도와 흥미	과학적 태도
에너지	1	5	11,20,24	25					24%
물질	10	2,19	23	16	14,21				28%
생명	3	4,18		7	8		13		24%
지구	6,15	12,17,22			9				24%
비율	20%	32%	16%	8%	4%	16%	4%	100%	

5. 영어과 평가 분석 -

<Bloom의 ‘인지적 교육목표 분류학’에 의한 영어과 이원목적분류표>

언어기능	인지능력수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비율
말하기								0%
듣기								0%
읽기	21문항	18,19,23,24						100%
쓰기								0%
비율	84%	16%						100%

<참고문헌>

교육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초등학교 교육과정

김경신(2007), 한국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순경외 7명(2002),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연구(II):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재분 외 3인(2001), 초·중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수준 분석연구 (II)-초등학생 대상, 한국교육개발원.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위원회(2008), 중1 진단평가 결과 분석

신은희(2007), 유럽개혁학교 탐방기, 제7회 충북참교육실천대회 자료집,

신은희(2008),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과 초등교육의 미래, 이명박교육정책, 초등교육의 정상화인가, 파멸인가? 토론회 자료집, 전교조 교과연합.

조성실(2006), 초등수학과 고시안의 문제점, 전교조 초등위원회.

조성실(2008), 아이들을 중심에 둔 참살이 초등3학년 교과서 실천사례, 제7회 참실발표대회, 전교조.

홍순희(2008), 3학년의 특징과 아동발달단계로 비춰본 3학년 교육과정, 바람직한 대안, 전교조 참교육연구소(미간행)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본적 관점과 원리

평화여성회 박인혜

평화적 갈등해결이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개인 간 갈등에서부터 집단, 국가 간 갈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파괴적, 강압적 폭력으로서가 아니라 건설적, 자발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전환을 포함한 모든 노력이다.(이재영 2002 참조)

갈등해결은 드러난 갈등에 대한 대처만이 아니라 드러난 갈등 이면의 원인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그 잠재된 갈등의 뿌리를 변화 또는 제거시킬 때 진정한 평화적 해결을 이룰 수 있다. 즉 폭력적 행동의 중지 또는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그 행동을 받침하는 신념, 가치관, 태도 등을 평화와 공존의 가치관, 신념, 태도로 변화시키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 해결은 갈등 당사자 모두에게 수용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계속 지탱, 지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Johan Galtung 1996)

평화적 갈등해결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 관점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다.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양한 개개인이 모여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데 각 개인은 너무나 다양해서—1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도 똑같지는 않다—조화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한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집단을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 그룹 또는 개인의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불만이나 요구가 드러나지 않고 쟁점이 무시된다면 마치 조그만 뾰루지가 종기가 되어 끓아터지는 것처럼 갈등이 점점 자라 매우 부정적으로—심지어 폭력적으로—표출될 수 있다.

갈등이 변화, 도전의 기회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개인,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2.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 사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이, 성별, 인종, 또 다른 문화,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차이에 따라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차이가 우열을 가리는 차별로 되고, 또는 무시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존중은 누구나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 나만이 아닌 타자 역시 존중한다면 다양한 관점과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갈등을 자연스럽게,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갈등의 한가운데 놓이더라도 건설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평화적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들은 존중을 기반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3.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있다/자주성과 주체성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다른 것은 태어날 때 지닌 특성 그대로 생로병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기 발전을 계속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사람의 주체성과 자주성이다. 남과 내가 다른 것이므로 나다워야 하겠다는 의식이 주체의식이요, 남이 나를 대신할 수 없으니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겠다는 의식이 자주의식이다.(고영복 2001) 평화적 갈등해결은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들 스스로의 지혜로 협동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4. 갈등해결의 답은 하나가 아니다/다양성과 창의성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갈등분쟁 당사자 모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사람들은 갈등상황에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문제를 판단하고, 내가 가진 ‘답’이 최선의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의 답은 주로 내가 이기고 상대가 지는 답이다. 주어진 틀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사자 모두 '자신의 답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옳은 것, 최선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스스로에게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내가 지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어떤 갈등상황에서도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똑같은 갈등이라도 그 갈등의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 그 해결은 달라질 수 있다. 정해진 답의 틀을 깨고, 고정관념과 편견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갈등을 바라보고, 창의적인 대안을 내울 때 더욱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 협동/존중하는 민주적 의사소통과정

갈등해결이란 당사자들 스스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대화로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나라, 문화마다 수천 수만 가지의 갈등이 존재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유형화해보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힘에 의한 것, 법 또는 규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대화이다.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당장에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 해결은 표면상의 억압에 불과하다. 일방적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대응은 폭력적으로 되기 쉽고 또 폭력으로 되돌아온다. 갈등을 억지로 눌러 잠재화시키는 것이지 결코 해결이 아니다.

법 또는 규칙을 통한 갈등해결은 합리적 방법이기는 하지만, 점점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의 모든 가능성을 다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또한 이 방법은 승패가 있어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패자가 된다. 당사자 스스로보다는 판정자에게 해결을 의존한다.

대화는 상대가 가진 생각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상호작용이다. 대화는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잘 듣는 것은 '존중'을 표현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대화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입장,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갈등 당사자들은 애초에 가졌던 각자의 목표를 새로운 공동의 목표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능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대안을 내울 수 있다. 관계상의 오해, 불신으로 비롯되는 갈등의 경우는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해결되기도 한다.

평화적 갈등해결이란 참여(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그리고 존중(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의 의사소통을 통해 협동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고,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2 한국사회에서의 '평화적 갈등해결'의 문화적 접근 방향

다양한 교육에의 접근: 어린이, 학생

문화를 변화시켜나가는 주요한 방법은 교육이다. 특히나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의 아동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1차 사회화과정인 가정에서부터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를 경험한다. 2차 사회화과정인 제도교육 안으로 들어가면 그 획일적 집단주의 문화, 수직적 권위주의 문화에 경쟁적 이기주의까지 '제도적 인간형'의 틀에 맞는 인간으로 길러진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쟁보다는 협동의 환경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생기는 갈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화적이고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현재 적 아이들의 사회,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미래의 평화문화를 형성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학벌중시문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폭력 왕따 등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므로 '갈등해결'에 대한 필요성도 모두가 공감하고, 대책을 내울 수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대상의 갈등해결 교육, 훈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아이들의 '창의재량'시간이나 모둠활동 또는 학생회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갈등해결 훈련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의 지혜를 끌어내는 갈등해결교육은 학교를 협동적인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고, 우리의 고질적인 여러 성격적 특성을 변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어릴 때부터 갈등해결능력을 키워나간다면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어린이의 인권 침해 사례와 해결 방안

인권교육센터 '들' 이기규

아래의 피해 사례는 성공회대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함께한 학교 인권교육 환경조성을 지침마련 보고서를 토대로 초등학생에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인권 침해 사례

1. 어린이의 존엄과 의사 존중

<학교>

- 학칙의 규정 자체가 학생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교사나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일방적으로 교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 학생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의 문항이 개방적이지 않아 특정 방향의 선택을 유도하거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학생 의견을 조사하고서도,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에 더 큰 비중을 두어 결정을 내리는 경우
- 담임교사가 학생의 자리 배치, 교우관계, 등교시간, 학급규칙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학생에게 준수를 강요하는 경우
- 학생에게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한 교칙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공개 요구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 건의서의 처리 형식적, 건의 절차의 복잡함.
- 학생의 인격이나 잠재력을 무시하는 말 : “네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 학생의 신체적 특성을 놀림거리로 삼는 말 : “뚱땡아~”
-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형태를 모욕하는 말 : “너네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느냐?”, “집이 그 모양이니...” 등
- 소수자를 회화화하거나 모욕하는 말 : “사내자식이 하는 짓이 이게 뭐냐? 호모새끼도 아니고...”, “하는 짓이 꼭 애자네”, “IQ가 도대체 몇이냐”, “너네 둘 사귀냐?”(장난을 치는 동성 친구에게) 등
- 주변 환경이 교육활동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수련회의 훈련 조교나 수학여행 때 관광가이드 등 교육 관련자들이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고 기합을 주는 경우
- 학생들의 건의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무시하는 경우
-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생의 표현물을 외부에 전시하거나 출품, 출판 등에 2차 활용하는 경우

<가정 및 사회>

- 가족회의가 아예 없거나 부모의 지시 전달 사항만 있는 가족회의
- 어린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원의 종류와 개수 정하기
- 기본적인 대화 시간의 부족과 수사반장식 질문 응답만 하는 대화
- 자아 존중감을 약화 시키는 대화
-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어린이에 대한 무시 및 반말 사용

2. 차별 금지

<학교>

- 학생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성적, 가족형태, 성, 인종, 외모 등에 따라 시설 이용, 학생생활 지도나 정계, 포상 등에서 달리 대우하는 경우
- 키 번호나 남학생 앞 번호 등 신체적 특성이나 특정 정체성을 근거로 번호를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경우
-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 채식을 하는 학생, 무슬림 학생 등 문화적, 종교적, 신체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식 식단을 짜는 경우
- 특정 정체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나 참고도서를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경우
- 학부모나 보호자의 잘못을 이유로 학생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경우
- 시설 개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특정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예) 학생은 중앙현관 출입 금지, 운동부가 아닌 일반 학생은 체육관 사용 금지 등의 규정을 두는 경우
- 남학생에게는 짐을 옮기는 일, 여학생에게는 실내 장식이나 청소 일을 시키는 등 은연중에 전통적인 성별 분업을 재생산하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 상담 때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따라 진로를 유도하는 경우
- 학생 대표를 정할 때 동수의 표를 얻는 사람 가운데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당선자로 확정하는 경우
- 하급학년과 상급학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하급학년에게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경우
- 빈곤가정의 학생이나 보호자를 무능력하거나 게으른 사람 혹은 문제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묘사하는 경우.
- 빈곤가정의 학생을 지원할 때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를 전혀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 학생대표에게 학부모 찬조금을 낼 것을 은연중에 요구함으로써 빈곤가정의

학생은 대표 역할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경우

- 교과서나 교사의 교육 내용, 학교의 행사 내용 등에서 특정 가족형태만을 예시로 제시하는 경우
: 예) 어버이날에 '엄마아빠 발 씻어드리기'와 같은 숙제를 내주는 경우
- 결손가정, 편부/편모 가정 등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편견이 깔린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가족형태를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
- 여학생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 개수가 남학생 화장실에 설치된 대소변기 개수에 비해 적은 경우
- 보건실에 남학생과 여학생 이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무리한 순결교육을 강요하거나 특정 성 경험을 여학생의 성 관념의 문제로 몰아 교육하는 경우
- 성교육 시간에 비혼 임신 여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임신이나 섹스 경험,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육이 부재한 경우
- 생리 자체를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검증 자료로 의사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생리 공결 처리에 까다로운 절차를 두어 이용률을 낮추는 경우.
- 특수학급 미설치, 편의시설 부족, 교사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장애를 가진 학생의 입/전학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 경사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아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예) 장애인 화장실이 한 층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폭이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학습 보조물이나 보조교사 등의 지원이 미비한 경우
- 운동회나 학예회 등 학교 전체 행사 때 특수학급 재학생에게 가정학습을 유도하는 경우

-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참가 포기를 유도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예) 학부모가 실비를 내고 참가할 경우에만 장애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경비를 보호자에게 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
-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
-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장애학생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따돌림, 위협 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 장애를 빗댄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전학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 졸업장이 아니라 수료증만 발급하여 상급학교 진학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 한국어 교육 등 필요한 학습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생활이나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체계가 전무한 경우
- ‘공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어떤 민족은 게으르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갖고 대함으로써 이주민 학생의 자존감과 학습 동기를 낮추는 경우
- 교과서나 교사의 발언이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함으로써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경우
- 특정 대륙이나 국가는 미화하고, 다른 대륙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잘못된 편견을 유포하는 경우
- 타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 개인의 문제행동을 특정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비난하는 경우

- 학생이나 보호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체류자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주변인에게 유출함으로써 보호자가 강제 출국되어 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
- 학생의 상황과 바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한국어 수준으로만 학년을 배치하여 또래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경우
- “사람 고기 먹어봤냐”는 등 상처를 헤집는 질문을 함부로 던지거나 “빨갱이”, “북한 놈”, “깜둥이” 등으로 모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신 국가나 지역을 함부로 공개, 노출시키는 경우
- 성소수자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언어, 이성애만을 정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유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 “동성애자는 변태다”, 호모, 동성연애자 등
- 성소수자라는 낙인을 부여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경우
- 특정 외모나 몸놀림, 생활양식 등을 규제하고 낙인을 부여하는 경우
예) 짧은 커트머리는 레즈비언이다, 여자끼리 손잡고 다니면 레즈비언이다, 목소리가 저런 걸 보니 호모자식이다
- 자신의 성적 지향을 탐색하고 있는 학생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거나 문제아처럼 대우하는 경우

<가정 및 사회>

- 학원 강사에 의한 성적, 외모 등에 대한 차별
- 기타 교육기관에서 장애 어린이, 이주 노동자 자녀 등을 입학 거부
-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강제 전환 시도

3. 교육에 대한 권리

- 정기적이며 상시적인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인권과 평화 존중과 존엄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의 부재
- 서열화의 우려와 있는 전국적인 시험 및 점수 공개
- 체육, 예체능 교육 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각종 경시대회, 글짓기 대회, 일제교사 등으로 경쟁을 과열시키고 기본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운동회, 학예회, 작품전시회 등 전시성 학교 행사를 과도하게 준비함으로써 정상적인 수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선도부나 학생대표 등에게 떠들거나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적발하는 일을 시키거나 떠든 학생의 이름을 쪽지에 적어 내도록 하는 등 동료들을 상호감시자로 만들고 특권의식을 심어주는 경우
- 교사 부재시 정숙 유도 등을 이유로 학생들 몰래 교실 상황을 녹음 또는 촬영하는 경우.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스파이가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 학교 또는 학년 교육과정 수립 시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경우. 현장학습 장소, 수학여행 장소나 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 학기 초 학사 일정이나 수업계획, 학교의 주요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을 위해 협의할 수 있는 틀이 부재한 경우
- 상급학교 선택 시 소위 명문대 지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학생의 교육 선택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경우
- 학교 건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학생들이 열악한 임시 공간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경우
- 실습 기자재 등이 부족하여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 컴퓨터, 인쇄기, 복사기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수업시간에 복도에 내보내는 등 학습권을 박탈하는 일을 손쉬운 처벌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

- 교문지도에서 걸린 학생들을 남겨 단체기합을 주느라 1교시 수업에도 못 들어가게 하거나 늦게 들여보내는 경우
-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수업시간 중에 학생을 불러내거나 교내 봉사를 시키거나 사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답을 불러주면서 문제를 풀게 하는 등 형식적 지도로 일관하는 경우
- 가혹한 훈련, 단체 기합, 폭력 등으로부터 학생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경우
- 선수 지도자에 의한, 혹은 학생 선수들 사이의 폭력을 알면서도 학교당국이 이를 묵인하는 경우
- 과도한 출전과 훈련으로 수업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 합숙소의 열악한 시설 상태나 생활 실태에 대해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해 열악한 조건에 학생 선수들을 방치해 두는 경우
- 합숙 기간이 너무 길거나 합숙소 외에 별도의 생활공간이 없는 학생에 대해 아무런 보살핌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진학이나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중단하는 학생을 위한 보살핌이 전혀 없는 경우

<가정 및 사회>

- 강제로 진행되는 학원교육
- 시험 결과 등의 성적을 통한 체벌 및 구속
- 11시 가 넘도록 하는 학원 교육

4. 학생자치와 참여권

-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공간, 자치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생 자치를 위해 배정되어 있는 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학부모단체나 회장단 어머니들에게 학교 행사에 꽃다발과 다과를 준비하게 하거나 금품, 행사 참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 보호자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경우
- 학급대표, 전교 학생 대표 선출시 간선제를 운영하는 경우
- 회의 안건이나 활동 내용을 교사들이 정해주는 경우
- 학생회의 1년 목표를 교사가 대신 정해주는 경우
- 학생회에 각종 성금 모금, 캠페인, 선도활동 등을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지시하는 경우
-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나 참관 자격 부여하지 않음

5. 신체의 자유

- 체벌, 단체기합 등 학생의 존엄을 모욕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벌을 주는 경우
- 연대 책임을 묻는 집단적인 벌을 주는 경우
- 교실이나 복도, 교무실 바닥에 무릎을 끓고 앉아있게 하는 경우
- 바닥에 엎드려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경우
-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엎드리게 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내보는 경우
- 과도한 줄 세우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육박을 지르는 등 학생에게 위협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경우
- 벌을 받고 있는 학생의 머리를 건드리거나 모욕적인 말로 추가적인 벌을 가하는 경우
- 교문에서 이미 벌을 받았는데 교실에서 다시 똑같은 이유로 벌을 주는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연거푸 벌을 주는 경우
- 준비물 부족이나 성적 등을 이유로 체벌을 가하는 경우
- 급식 지도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나 위협을 통해 음식을 먹

게 하는 경우

- 특정 신체 부위를 빤히 쳐다보거나 만지거나 껴안는 등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교사나 행정직원의 사적 용무를 위해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무실이나 교장실, 교사 휴게실, 직원 화장실 등에 대한 청소나 관리를 학생들에게 맡기는 경우
- 뚜렷한 교육목적도 없고 전체 학생이 참석할 이유도 없는 각종 교과외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경우
: 예) 체육대회 응원, 학교 시설 기공식이나 개장식, 교육청 주관 글쓰기 대회 등

<가정 및 사회>

- 가정에서의 학대 수준의 체벌 및 알몸으로 내쫓기 등의 학대
- 학원 등에서의 지각 시험 성적 하락 등을 이유로 가혹한 체벌

6.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제하거나 특정 국가관을 강요하는 경우
- 운동장 애국조회, 반성조회, 방송조회, 사랑의 매 전달식 등 일방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전체 학생을 한 데 집합시키는 경우
- 반공 포스터 그리기, 반일 글짓기 등 특정 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 교사 개인의 종교를 포교할 목적으로 경전이나 종교서적 읽기나 쓰기를 과제로 내주는 경우
-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가정 및 사회>

- 모태 신앙 등의 이유로 특정 종교의 강요

7. 표현의 자유

- 학생 매체가 아예 없거나 학생 매체의 편집권이 사실상 교사에게 있는 경우
- 학생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중단시키거나 용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집회, 시위에 대해 금지하는 경우
- 집회, 시위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유포하는 경우

8. 사생활 개인 정보 보호

- 일기장을 검사하거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상하는 경우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기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외부에 출판하는 경우
- 학생이 쓰거나 받은 편지, 쪽지, 다이어리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함부로 열어보거나 반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경우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앨범 등 사적 기록을 함부로 열어보거나 공개하는 경우
-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물품이 아님에도 휴대전화, 만화책, 미용도구, 카메라, 게임기, 장신구 등 특정 물품의 소지를 아예 금지시키거나 빼앗는 경우
- 휴대전화를 아침에 일괄 수거하거나 쉬는 시간에도 전원을 꺼놓게 하는 등 통신활동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
- 디지털카메라 소지나 촬영을 원천 금지시키는 경우
- 가방, 사물함, 책상 서랍, 기숙사의 생활실 등 개인 공간을 함부로 뒤지거나 검사하는 경우
- 학생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소지품검사를 몰래 실시하거나 전체 학생을 대상

으로 불시에 무차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 학교가 가정환경을 조사하면서 보호자의 직업, 재산, 주민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우
- 사진이 붙어있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도록 강요하는 경우
- 교사가 학생의 학원 수강 시간, 종교, 친구관계, 연애 등 사적 정보를 과도하게 파악하는 경우
- 학급 학생들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등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 졸업앨범 뒤에 졸업생 명단과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는 등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 사법 당국이나 언론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학생의 정보를 함부로 넘겨주는 경우
- 학생의 가족형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급식지원 여부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의 개인 정보나 사진 등을 함부로 노출시키는 경우
- 학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면서 손을 드는 방식 등으로 공개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경우
- 학생 정보 입력을 학생들에게 대신 입력시키는 경우, 시험지 채점을 학급 임원들에게 시키는 경우
- 신체검사나 보건실에서 파악되는 건강정보, 학생의 병력 등을 함부로 노출시키거나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는 경우
- 학생의 시험성적, 수행평가 결과를 복도에 게시하거나 성적순으로 자리를 앉히는 등 정보를 일방 유포하는 경우
-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정보에 대해 성격별로 달리 취급하지 않고 모두 보호자에게 일을 공개해버리는 경우
- 상담을 통해 파악된 학생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당사자의 동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복도, 교사, 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

하는 경우

- 친구관계나 연애 관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 특정 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9. 정보 접근권

○ 학교에 의해 수집, 기록, 보관된 정보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네이스)

○ 학생들에게 학교 운영위원회 결과의 공개 하는 절차가 아예 없거나 형식적
으로 보고함.

○ 학교규칙이나 생활 안내 관련한 학생 수준의 어휘로 구성된 책자나 홍보물
부족

○ 도서관 이용의 재한 및 도서 자료의 부족

9. 건강권

○ 신체 치수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 시력을 저해하는 조도의 조명기구를 방치하거나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 검사와 정비가 불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화장실 위생 상태가 불결하거나 비누나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교실 커튼 등 큰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기구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교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 학교 주변의 공사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거나 분진과 소음으로 학습과 건
강을 침해하는 경우

○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스트레스, 불안 등의 정신 건강을 보듬는 교육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상담 전담 교사가 없는 경우

○ 학생이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학생
의 정신력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경우

○ 몸이 아파 조퇴를 하거나 병원에 다녀오려 해도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불
허되는 경우

○ 침상 등 보건실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방학 중 보충수업이 진행되는데도 보건실은 운영되지 않는 경우

○ 보건실 문을 잠그고 교사가 자주 자리를 비워 보건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급식 지원 아동에 대한 공개나 낙인, 차별적인 시선 등으로 급식 지원 신청
을 거리게 만드는 경우

○ 학교 외에 다른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

○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 급식 식단을 짤 때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 급식비 미납 학생을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독촉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 건강 검진 시 파악되는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경우

○ 체육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비가 올 때 대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 학생의 체형과 특성에 맞는 운동 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장애학생, 여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체육 교육이 부재한 경우

○ 체력검사 결과를 점수화하거나 무리한 등급화를 시도하는 경우

○ 체력 단련, 비만 치료 등을 명분으로 학생을 일찍 등교시키거나 방과 후에
남겨서 따로 과도한 운동을 시키는 등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경우

10. 안전권

- 페인트, 바닥재 등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 교실 창문이나 복도 난간에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높은 놀이시설 아래 모래 등 충격 흡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골대나 농구대 등 운동기구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안전유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안전사고 예방을 명목으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의 책임을 당사자나 교사 개인에게만 돌리는 경우
- 과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을 다룰 때 안전장치나 안전을 위한 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
- 수련시설 등 학교 밖 교육활동시설을 선택할 때 화재나 추락사 예방 등 안전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통학로에 인도나 횡단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통학로에 위험한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대체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등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통학수단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일괄 규제하는 경우
- 화재나 사고 시 응급 처치 방법 등 긴급 대응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1.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등교시간을 함부로 당기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향유하는 놀이의 유형이나 놀이 공간에 대해 부당한 통제를 가하는 경우
- 내용에 관계없이 만화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독이나 소지를 금지하거나 빼앗는 경우
- 쉬는 시간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음악재생기를 통제하거나 빼앗는 경우
- 학교 운동장이나 교정에서 편히 쉬거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교 운동장을 학생 선수의 훈련 장소로만 전용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놀이 공간을 빼앗는 경우
- 편히 쉴 수 있는 실내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문화 활동을 하는 동아리의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문화 동아리의 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소음 방지 설비를 갖추지는 않고 동아리가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우
-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문화공연 관람을 결정할 때 학생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 학생이 가진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유형의 문화만 관람하는 경우

12.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 성문화된 징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건을 맡은 교사마다 처리 방식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
- 교내 도난사건, 폭력사건 등을 조사하면서 특정 학생을 범인으로 공개 지목하는 등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을 주는 경우
- 도난사건 조사, 시험 부정행위 예방 등을 이유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을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

- 상습적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간소화시켜 해당 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조사 과정에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자백이나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 학교가 행사할 수 있는 징계 권한을 넘어서는 교도소 감금 등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하여 학생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경우
-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과 관련 없는 질문을 던지거나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
- 긴급성이 없는데도 오랜 시간 상담실에 남겨 두어 수업을 못 듣게 하거나 교내 봉사를 수업 시간 중에 시키는 경우
- 학생을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조사하지 않고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 불러내어 혐의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경우
- 학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직접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보조인과 함께 징계 심의 기구에 출석하여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학생의 변론권 행사를 변명이라고 여기면서 입막음을 하거나 가중 처벌을 가하는 경우

13.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가정 안에서 학생이 학대 받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 학대 받는 학생의 발견, 구제를 위한 조치 등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겨두고 있는 경우
- 학생을 가해한 보호자의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
- 방임 형태의 학대를 받는 학생에 대해 동료 학생들의 놀림이나 따돌림, 폭

력 등이 이루어지는데도 이를 방지하는 경우

- 피학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년 간, 학교급간 연계가 되지 않아 피학대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 수업 도중에 경찰이 학교를 찾아와 학생에 대해 참고인 또는 용의자 조사를 벌이는 경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 체포영장의 소지 여부, 긴급성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학생을 경찰에 인계하는 경우
- 보호자나 보조인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경찰에 인계하는 경우
- 학내 성폭력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 폭력 예방 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정 및 사회>

- 가정에서 방임 및 방치
- 어린이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의 미비

-----해결 방안-----

1. 어린이의 참여 공간 확대, 참여 기회의 다양화
2. 교사, 학부모 등 어린이 인권 가해 대상자를 위한 인권교육의 확대
3. 학교에서의 인권 교육의 전면화
4. 학원, 가정, 학교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공감 확대
5.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학부모, 교사 어린이 삼 주체의 지속적인 연대의 장 마련



학교에서의 장애와 인권

-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동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서울연희초등학교 특수반 교사 이은미

장애인들의 치열한 투쟁에 힘입어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과 같은 문제가 사회화되기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장애를 둘러싼 주위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편의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거리에서 전동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을 보는 일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고,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나 다큐멘터리도 많이 제작되어 온 국민이 장애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도 같다.

특수학급 교사로 일한 십 몇 년간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장애 아동의 이동, 신변처리, 학습활동을 보조하게 되었고, 특수학급 아이들도 치료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방과 후 활동도 지원받게 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수학급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장애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급식 등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학부모의 높아진 권리의식 그리고 변하지 않는 장애에 관한 편견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아이들도, 교사도, 부모도 괴롭다.

이 글에서는 장애 아동의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편의상 학급수준, 학교수준, 교육청 및 국가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학급수준 : 여건은 충분치 않지만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

○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특수학교로의 전학강요 : 장애 아동에 대한 입학 거부나 전학 강요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특수교사 또는 일반교

사의 자의적 판단아래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교육기관의 여건 부족을 이유로 타 교육기관으로의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장애 아동 교육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교사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 특수학급 수업 참여권 침해 : 거의 모든 특수학급은 시간제로 운영된다. 아동의 장애 및 학습 수준에 따라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의 지도 교과 및 시간을 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운영할 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수학급의 경우도 수업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상황에 따라 전체 수업을 하기도 하고, 개인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통합학급의 예고 없는 시간표 변동은 특수학급 수업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다. 특수학급 수업이 있는 시간에 아동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해진 시간에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것은 개별화교육계획에 의거한 법적 권리이므로 지켜져야 마땅하며, 학교 및 학급 행사 등으로 시간표 변동이 있을 경우 특수교사가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통합학급 수업참여권 침해 : 마찬가지로 개별화교육계획에 의거 일반학급에서 수업하기로 협의된 시간에는 아동의 일반학급 수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일부 통합학급 교사들은 장애 아동은 어떤 교과 수업이 진행되던지 적절히 참여할 수 없으므로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참여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육기회마저 박탈해서는 안된다. 시간표가 변동되었음에도 특수학급에 가는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이동 수업 시 특수학급 학생이 통합학급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동하는 등의 행동은 장애 아동이 받아야만 하는 수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학급 시간표 운영 시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 장애 아동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 학교 및 학급 행사, 수업준비물 등의 예고 차별 : 학급에서는 원활한 교육활동 진행을 위해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을 통해 각종 행사나 수업 준비물을 안내한다. 특수학급 수업이 있어 장애 아동이 자리에 없거나, 알림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흔히 이러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수업 준비물이 없어 수업에 원활한 참여가 어렵거나 가정에서 필요한 행사 참여 준비 등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장애 아동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챙겨주거나 알림장 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거부 :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통합학급 수업에서 장애 아동의 참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며, 어떤 아동에게는 통합학급 수업 기회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수교육보조원이 꼭 필요한데도 교사의 부담을 이유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거부, 통합학급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거나 보조원이 배치되었을 때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의 참여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이 것 역시 장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된다.

○ 현장학습 등 학급 행사 참여 배제 :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외에도 다양한 학급, 학교 행사가 진행된다. 생일잔치 등 학급에서 계획되는 행사도 있고, 각종 대회, 보건교육이나 소방대피훈련,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계기교육, 현장학습, 수련회, 월요조회 등 학급 단위로 참여하는 학교 행사들도 있다.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장애 아동의 교육 방식 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러한 행사의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또 담임교사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현장학습이나 수련회 등의 야외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사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가능한 것으로 참여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장애 아동의 행사 참여 보장을 위해 적

절히 주의를 기울이고, 장애 아동의 특성상 참여가 어렵다고 여겨질 때는 특수교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 경쟁적인 학급 분위기로 인한 장애 아동의 소외 : 학급운영상 교사들은 다양한 상벌체제를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활발한 수업 참여를 위해 게임 등 경쟁적인 요소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게임이나 상벌체제 등을 활용할 때 장애 아동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장애 아동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실제 경험상 그러한 이유로 왕따의 위기에 처했던 아이들이 있다. 조별 과제 수행시 장애 아동을 포함시켜 활동하려는 노력에 대해 보상하거나 적절한 수행을 하기 어려운 장애 아동은 번외 경기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도 함께 요구된다.

○ 일반학급 학생들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부족 : 특수학급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공부 못하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격리시키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 안 들으면 특수반에 보낸다.'와 같이 특수학급과 장애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하는 교사가 있다. 전체 아이들 앞에서 장애 아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교사의 개인적 인식 전환과 아울러 반 아이들이 장애 아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 방임 혹은 과도한 행동주의적 접근으로 인한 폐해 : 학급에는 다양한 규율과 규칙이 존재한다. 규율과 규칙을 따르는 것은 학급 뿐 아니라 여럿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기도 하다. 일부 통합학급 교사들은 장애 아동들을 무조건 봐주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장애 아동이 따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많은

특수학급 아이들이 여러 해의 교육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는 안해도 돼'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는다. 이것 역시 장애 아동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성과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사들은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학급 규칙과 규율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수교사의 과도한 행동주의적 접근 역시 재고해 보아야 한다. 행동주의적 접근은 장애 아동의 문제 행동 교정에 대해 의미 있는 접근임에는 분명하지만, 혐오자극의 남용 등 과도한 행동주의적 접근은 장애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학교수준 : 학교 관리자의 의지와 학교 구성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 입학거부 : 많은 장애 아동 부모들이 입학 전 학교로 상담을 온다.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거부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교육 여건의 부족을 들어 입학을 거부한다. 학교는 입학거부 이전에 특수학급 설치,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요구 등 장애 아동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특수학급 수업 참여권 침해 : 특수학급 수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학교 관리자들은 '아이들이 적다'는 이유로 특수교사에게 일반학급 수업의 보결을 요구하거나 특수교사 휴가 시 강사 임용을 거부하기도 한다. 심지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때 12월까지만 계약하고, 2월에는 통합학급에서 수업받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수학급 수업 대신 다른 학교 업무를 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통합학급의 현장학습, 수련회 등에 특수교사가 동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현장학습, 수련회에 가지 않는 나머지 아동들의 특수학급 수업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관리자는 장애 아동들이 개별화교육계획에 의거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채용, 강사 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하며 특수학급 수업을 방해하는 여타의 지시 등을 삼가야 한다.

○ 안전사고에 대한 각서 요구 : 현장학습이나 수련회 등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앞서 장애 아동에 대해 부모의 동행을 강행하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보통 학급 수준에서 보다 학교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전사고는 교육활동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예상되는 장애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보조인력 채용 등의 대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 보조인력 채용 거부 또는 보조인력 다른 업무에 배치 : 학교 관리자들 중에는 장애 아동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조인력 채용을 '관리의 어려움'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학교 청소나 교무보조 등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지원되는 보조 인력도 충분하지 못한 형편인데, 제도적으로 보장된 보조 인력조차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장애 아동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며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 특수학급운영비의 오용 : 많은 지역에서 장애 아동 부모들의 투쟁에 힘입어 특수학급 운영비가 증액되어 교부되었지만, 학교 단위에서 적절히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르쳐봐야 별 소용도 없는 아이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예산을 지출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수교사의 물품구입 요구를 사사건건 방해하거나 학교 운영을 위한 다른 경비로 사용하도록 협조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다. 또, 일부에서는 학급의 기본시설인 프로젝션 TV, 교사용 컴퓨터, 책상 등을 학급운영비로 지출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특수학급의 전기료, 수도료 등을 별도로 책정, 지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특수학급

운영비는 기본적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외에 장애 아동 교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교재, 교구 등을 확보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교부되는 예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반쪽 교실 : 역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특수학급 교실의 크기는 정규 교실과 같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정규교실의 반을 나누어 특수학급으로 사용하거나 정규교실이 아닌 다른 공간(상담실, 보건실 등의 용도로 계획된 공간)을 특수학급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 여건상 교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일반학급 교실이 부족하여 교실을 반쪽만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텐데 유독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아이들을 위한 교실 확보는 학교 시설 운영상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 게다. 넓은 교장실, 교무실과 각종 특별실, 심지어 방과후 활동을 위한 교실까지 모두 확보하고도 ‘특수학급 줄 교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 부적절한 특수학급의 위치 : 반쪽 교실과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한 특수학급의 위치 선정이다. 특수학급은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하는데, 학생의 왕래가 거의 없는 교장실, 교무실 등에 가까이 위치하거나 학교의 구석진 곳 등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학교장은 특수학급에 너무 헛빛이 만들어 교실 위치를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는 특수교사에게 “40명의 아이들이 헛빛을 못 봐야겠느냐”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학급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어야한다는 것은 아니나 40명의 아이들이 1년 동안 헛빛을 못 보는 것은 안 되지만, 6명의 아이들이 졸업 때까지 내내 헛빛

안 드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은 괜찮다는 식의 단순계산법으로는 장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영원히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 학교 전체적인 차원의 접근 부족 :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 아동 교육은 특수교사만의 업무이다. 특수학급 수업, 통합학급 지원, 보조원 활용 및 관리, 방과 후 활동 계획 및 운영 등 특수교사의 업무는 나날이 과중해져간다. 제도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장애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 전체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 아동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교과교사, 특수학급 교사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학년, 업무부서, 각종 위원회 등 학교의 각각의 단위에서 각종 계획을 세울 때, 장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같이 협의되어야한다.

3. 교육청 및 국가수준 : 제도나 법적 정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소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는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선정 및 배치를 위한 진단평가는 학교에서 진행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학교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심사하기만 한다. 이런 형식적인 선정 절차로 인해 실제로 학교에서 신청한 아동 중 선정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입생의 경우 3월 중 선정 신청이 이루어지고, 4월이 되어서야 선정 통지를 받으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특수교육적 지원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학기 초 학급 편성 보고 시에는 특수학급 학생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생긴다. 또, 특수학교에 갈지, 일반학교에 갈지, 완전통합을 해야 하는지, 특수학급에 시간제로 참여해야하는지 장애아동의 교육적 배치에 대한 협의나 조언도 없는지라 학부모들은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

보와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아동의 취학을 결정해야한다. 또, 학교나 교사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학거부 또는 전학 종용과 같은 인권침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데는 이러한 이유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아동들을 조기에 선별하고, 진단평가하고, 적기에 선정, 배치해야한다.

○ 특수학교, 특수학급 부족 : 이전 근무하던 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시 인근 지역의 중학교가 모두 사립으로 특수학급이 없어 곤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장애 아동이 필요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학급을 마련해야하며 장애 아동의 교육이 무상 의무교육 인만큼 사립 학교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보조 인력 배치 부족 : 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현재의 특수교사와 보조 인력의 수준으로는 통합교육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학부모의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보조 인력에 대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당 1명의 보조원을 배치해놓고 민원만 발생시키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장학습을 위한 보조 인력이 지역 교육청당 1명 정도 배치되었지만, 1명의 보조원이 관내 모든 학교 장애 아동들의 현장학습을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학생의 신변처리를 남자 보조 인력이, 남학생의 신변처리를 여자 보조 인력이 담당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지만, 역시 지금의 보조 인력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 아동의 신변처리 보조를 위해 특수학급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쉬는 시간에 여러 명의 아동을 이동 보조해야 하는 관계로 보조원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최소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조원의 수만큼은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 통합학급 교사들은 장애 아동이 통합학급 수업시 물리적 통합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매우 갑갑해 한다. 통합학급 수업의 질을 확보하는 문제는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 현재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다양한 장애 아동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상세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 사실 통합학급 수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특수학급의 경우 전적으로 특수교사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수업 뿐 아니라 평가,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과정 시행상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대책은 공교육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 과밀 학급과 교사들의 수업시수 : 우리나라의 경우, 1인의 교사가 담당해야하는 학생의 수와 수업시수가 너무 많다. 교사에게 주어지는 잡무도 너무 많다. 수업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아이들이 들어야하는 교과목도 교육내용도 방대하다.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간에 협의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과정 수정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장애 아동 교육 역시 개선되기 어렵다.

○ 편의시설 설치부족 : 모든 학교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장애 아동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주 건물에만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특수학급 주변에만 설치된 손잡이와 장애인용 화장실은 생색내기일 뿐이다. 편의시설은 학교 내 어떤 곳이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인지능력이 낮은 장애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조 인력도 필요하다.

○ 교사 교육 부족 : 장애 아동 부모들은 학기 초마다 '장애 아동을 맡은 것

이 처음이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담임교사들을 만나며 절망 한다. 장애 아동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반교사들도 허다하다. 교사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교사 양성 및 현직 연수를 통하여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 통학지원 : 많은 수의 장애 아동들이 혼자 학교에 오지 못한다. 부모와 함께 학교에 통학하는 아동들은 동행하는 부모가 아프거나 사정이 생기면 학교에 오지 못하게 된다. 장애 아동이 언제라도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통학 보조 인력 지원 등을 통하여 통학을 지원해야 한다.

장애 아동의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두서없이 늘어놓다보니, 장애 아동에게 보장되는 권리라는 게 도대체 있기는 하는 걸까하는 생각마저 듦다. 장애 아동 부모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각종 요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요즘은 장애 아동의 인권 침해 당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롭다.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적절한 지원 시스템은 만들지 않으면서 특수교사 1인이 그 모든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에 대한 분노도 크다.

높아져가는 권리의식과는 다르게 초등학교에서 학력평가가 부활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쟁과 성과 위주의 교육정책이 실행되면서 장애 아동의 학교에서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만 가는 것 같다. 지금까지 초등교육에서 장애 아동 교육이 외연으로나마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초등교육의 가치가 전인적인 발달에 있음을 공유해왔기 때문이다. 학력신장이 전인적인 발달을 대신하고, 경쟁의 가치가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대신하게 될 때에는 장애 아동 교육의 근간이 무너지리라는 우려가 듦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의 실현이 앞서 언급한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에 앞서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아닐까 싶다.



일제고사 그리고 초콜렛으로 강요된 침묵.....

서울삼릉초등학교 교사 장서문

선택적 일제고사의 제안-사건의 시작

1. 3월 4일 학교 자체내에서 진단평가를 예년과 같이 실시했습니다.
(교감님 말씀이 부장회의에서 진단평가 2번 쳐도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2번 실시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2. 3월 10일 일제고사 전날, 부모님들께 제가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시험의 폐해를 잘 알려드리고, 시험치는 것의 여부를 선택하시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학교에서 5-2반 부모님께 문자메세지를 넣어 '시험을 꼭 봐야한다'고 안내(?)를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저녁에 교장님께서 친히 전화를 일일이 하여 학부모님과 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어떤 아이가 말하길 "선생님! 우리 엄마 어제 교장선생님 전화받고 깜짝 놀라서 통화하다 음식 다 태웠어요!!")

3. 3월 11일 오전, 18명의 아이들이 행복한 얼굴로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부모님싸인을 통신문에 받아왔고, 나머지 13명의 아이들은 스스로 원해서 혹은 부모님의 권유로 시험에 응하였습니다. 같은 시간 18명의 아이들에게는 4학년 복습 학습지를 풀게하였습니다.

11일 오전 1교시와 5교시 / 5-2교실상황

교장님께서 저에게 "시험을 지도 감독하겠다" "하셔서 그러시라했고, 교장님께서 시험안 본 아이들 이름을 적어가시기에 "그러지 마시라" 만류해도 안

들으셨습니다. 결국 종이를 거의 뺏다시피 해서 아이들의 신상을 보호했지만, 나중에 아이들에게 들은 사실로는 시험지를 훌끗거리시면서 시험안본 아이들 시험지에서 이름을 보고 종이에 적어가셨다 합니다.

11일 시험당일 오전 교무실 상황

교감님께서 시험치지 않은 아이들을 긴급파악하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시험치기를 강요하였다 합니다. 놀란 학부모들은 시험당일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4. 3월 12,13일 두 차례의 교육청 조사와 학교기사님들과의 마찰

장학사가 조사를 다시 나온다하여 "초등위원회장님과 강남지회장님과 함께여 야만 조사에 응하겠다" 했더니 기사님들이 교무실과 회의실 통하는 문 그리고 교장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키를 가지고 몸으로 막아서서 조사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교육청과 서울지부의 조율로 이 일은 윗 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첩보작전의 시작- 몰래카메라의 주인공은 담임교사였다

5. 3월 14일 (금) 4시 - 또 하나의 거짓말

분명 교감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잘 협조하면서 지내자! 또 이런 마찰이 없길 바라고, 일제고사 문제는 끝난 것이니 걱정안해도 된다" 하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6. 3월 16일 (일) -어머니들 소집

어떤 학부형께서 "선생님, 너무 힘드시죠..저희가 시험 볼께요"라는 메세지 가 도착하여 전화를 여러 곳 해보니 오늘 오후 4시에 시험 안 쳤던 아이 엄

마들이 모두 모여, 시험치겠다는 싸인을 해서 담임에게 드리기로 했다는 것 이었습니다.

누구의 의견인지 물으니, 계속 학부모님들은 말씀을 우물쭈물하며 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을 위해서 시험보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짤리시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희가 시험보게 하는 것이 선생님을 위한 길이잖아요."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만일 제가 짤리는 것을 예상하고도 일을 벌렸다면 그것 이야기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시면 더 일이 커지는 겁니다"하였습니다.

7. 3월 17일 (월) 아침

교장님께 가서 이 사실을 물었더니 "언제 내가 끝났다고 했냐? 시험안 본 아이들 보게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했고, 본인은 절대로 모여서 싸인하라는 전화를 학부모에게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감님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럼 누가 전화하라 했는지, 분명 학교에서 전화 받았다고 엄마들이 그러시는데, 유령이 전화를 한 것인가?"고 물었습니다.

두 분다 절대 전화한 적이 없다면서도 "도대체 누구 엄마냐?"는 질문을 계속 하여, 어제의 모임이 무산된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교사 모르게 학부모님에게 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끝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불안을 조장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어야 하는 심정에 무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8. 3월 19일(수) 학부모 총회 때

일제고사와 관련한 분란에 놀란 어머니들을 진정시키고, 저의 뜻과 이번 일의 상황을 잘 수습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담임선생님이 바뀐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는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과 같은 일로 혼란을 더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바로 전 날 첨보작전이 일어난 지도 모른 채 엄마들 앞에서 수습을 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황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질서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폭력, 문제는 소리없는 폭력이라는 점이었다. 초콜렛과 빵, 신기한 경험으로 예쁘게 포장된 달콤한 폭력이었다. 그러나 달콤함으로는 감출 수 없는 눈물과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진실은 송곳처럼 아이들의 가슴을 뚫고 나왔다.

9. 4월 4일(금) 점심시간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선생님 절대로 절대로 제 얘기 듣고 울지 마세요!! 사실은 시험 안 친 애들 1일날 선생님 학교 안 나오셨을 때 밑에 불려가서 시험쳤어요! 그리고 그 시험 친 아이들에게 교장, 교감선생님이 사탕하고, 초콜렛을 주면서 ”절대로 담임선생님께 시험 본 사실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 이유를 애들이 모르니까 ”그냥 담임선생님이 알게 되면 속상해 하실까봐“라고 했대요. 선생님, 울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 했다고 절대 말하시면 안되요!!”

어떻게 이런 일이.....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심장이 정지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 4월 7일(월) 6교시

주말 내내 고민 끝에 아이들 가슴속에 깊이 20여 일간 묻어두었던 <강요된 비밀>에 대해 짐을 벗겨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아 선생님 시험안 본 아이들, 시험 불려가서 보게 된 것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어....(아이들 모두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놀란 얼굴을 하며, 순간 찬물끼언듯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일에 대해 언제까지 선생님에게 비밀로 할 거니? 선생님에게 이야기

해줄래?”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야! 누가 말했어!! 너야?”

“나 아니야~~~”“선생님! 선생님이 안 오신 4월 1일 아침 8시 50분쯤, 갑자기 강사선생님이 몇몇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교무실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갑자기 교감선생님이 과학실로 데려가 일제고사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3교시 중간쯤까지 시험치고, 다시 우리들을 교과실로 데려가더니 사탕하고, 초콜렛을 주면서 절대 이 사실을 담임선생님과 나머지 애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묻자 그냥 담임 선생님이 아시면 속상하실까봐 라고 하시면서요!!“

“야!! 그래서 그 때 음악선생님이랑 영어선생님이 ‘너희 어디갔다 오는 길이냐’고 물으셨는데도 너네들 아무 말도 안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 때 니들 영어랑, 음악교과 빼먹고, 수업중간에 들어와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고 우리가 물어보고, 영어, 음악선생님이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구나. 그리고 비밀이라면서 말을 안했던 거구나!!”

“저희 엄마는 이런 쓸데없는 시험 보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안 오신 날 교장선생님이 내려오라고 부르셨는데도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때 이후로 교장선생님이 저를 쳐다보실 때마다 웃음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아까도 다른 분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가 제가 곁을 지나가니까 절 보자마자 안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뇌물먹였어, 뇌물!!”

“협박 했어 교장선생님이 ”

“협박당한 거지. 우리가”

“너네 빵도 먹었다며? 2% 음료수하고?”

“아니야! 사탕하고 초콜렛이야!! 난 빵 안 먹었어”

“아니라니깐!! 난 빵하고 음료수 먹었는데? 그리고 시험도 밤에 학교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쳤고, 저녁도 못 먹고 시험 봤단 말이야!!”

“뭐야?? 아니야----선생님 안 오신 날 1,2교시에 시험쳤잖아!”

“아니야 난 밤나 두” “나 두”

“나 두!! (흥분된 목소리로)정말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언제 2,3,4반 교실 불 안 꺼지고 늦게 퇴근하신 날 있죠?(학부형 총회 바로 전날입니다-18일) 그날 7시 30분까지 정문에 10명의 애들이 숨어 있다가 그래도 선생님이 퇴근 안하시자, 편의점에 가서 숨어 있다가, 결국 상육이네 집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다 나오니깐, 그 땐 교실 불이 꺼져있더라구요. 그래서 교무실로 들어가서 교감선생님이 회의실로 들어가라고 해서-운동장에서 시험 치는 모습이 보일까봐-편한 소파에 앉아서 시험보고, 빵이랑 음료수 주셔서 먹고, 시험 다 치고 나오니까 밤 9시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깜깜한데 실컷 놀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야 ~~ 그 때 너 교장선생님 자리에 앉았잖아!!”

“맞아요. 진짜 폭신풍신 했어요”

“영어 듣기 평가는 어떻게 봤니?”

“교무실에 컴퓨터에서 교감선생님이 틀어주셨어요”

“그리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4월 1일날 제가 출근안한 날 시험 본 것만 알았지, 이미 20일전 학부모 총회 전날 밤 시험본 걸, 몰랐던 상태에서 들은 아이들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에게 계속 물어보니까 ○○이가 너만 살짝 알고 있고 절대 다른 애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시험 친 걸 말해줬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저는 3월 11 일 날 시험을 보았는데 자꾸자꾸 애들이 비밀로 무언가를 숨기고,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소외된 기분이 들었고, 왜 그러는지 몰라서 너무 답답했어요”

“(화난 목소리로) 교장선생님이 일제고사날, 제 시험지를 훌끔거리면서 이름 적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시험 중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참았어요!!”

“저는 시험 당일날 시험봤는데, 계속 우리반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 때 시험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시험치기 전날 엄마들끼리 계속 전화하고, 교장선생님에게 전화가 자꾸 와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과학실에서 시험 본 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교장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가 시험 자--알 봤다고 말했다면서, 엄마가 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절대 시험 잘 봤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진짜 이상해”

“그래도 너희는 빵이라도 먹었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나중에 시험보는 건데! 어차피 볼 거였으면 빵 먹고 시험치고, 비밀도 알게 되고, 재밌는 경험도 하는 게 낫지!!”

“(임원 중 한 아이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먹거리며) 엄마가 이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고, 선생님도 힘드신 것 같아서.....마음이 너무 안 좋고 무거웠어요”에 쳤어!”

“그렇게 힘들었으면 너희들 왜 선생님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니?”

“그건요, 선생님 !! ○○엄마가 한 달 동안 비밀을 지켜준다면 나중에 모여서 파티해주시기로 했어요!!”

“애들아 오늘에서야 너희들끼리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서로 숨겨야만 했던 비밀을 다 털어놓았구나, 선생님은 선생님만 속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다. 너희끼리도 숨겨왔던 사실을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비밀을 털어놓으니까 기분이 어때니?”

“속이 시원해요”

“그래 아마 그럴꺼야. 너희가 알고 있었던 일들, 혹시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글로 적어주겠니?”

아이들은 6교시가 넘도록 글을 써내고, 집에도 가지 않고 교실곳곳에서 응성거리며 모

여서 자기네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어떻게 거짓말을 하라고 할 수 있어!!”

“이거 언론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기분 나빠”

이로서 일제고사는 1차, 2차, 3차에 나누어 본 것이 되어버렸고, 결국 18명 중 15명의 아이들이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3명 중 하나는 거의 매일 4교시에 나오는 아이여서, 또 한 아이는 운좋게(?) 풍납동 영어마을에 체험학습 가느라고, 또 한 아이는 유일하게 시험을 끝까지 스스로 거부하여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그 3명의 아이들이 4차 시험의 대상자로, 저 모르게 끌려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들을 수 있었으나 못 들은 척 하였고, 말할 수 있었으나, 말하면 안 되었다. 아이들은 어렸지만, 어릴 수 없었다 - 아니, 아이들이면 안 되었다. 누군가 내 눈과 귀를 틀어막을지 모르기에...

11.4월 8일(화)

아이들에게 무언가 정리를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바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에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느낄 수 있는 가슴,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담임 귀에 들어갈까 봐 두려움(?)에 떠는, 아니 그 어떤 것이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엇인가를 숨기고, 속이려고 했던, 그래서 한밤중에 아이들의 저녁까지 깊겨가며, 또 과학실과 교과실에 아이들을 감금해놓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첨보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아마도 교감님과 교장님은 아이들이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존재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말 못할 짐승이나 움직일 수 없는 풀마저도 살아있고 움직이는 생명일진
대.....말입니다.

선생님이 해고당할 거라는 거짓말과 시험을 치면 팬창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조용한 학급을 혼란에 빠뜨리고,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교장님과 교감님을 감싸주기엔 아이들은.....이미 너무
나 많은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허수아비처럼 되어버린 종이호랑이 담임교사로서 무언
가 정리는 해야겠기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들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그리고 이번 일로 모든 학교일을
불신하게 된다면, 더 나아가 모든 선생님들에 대해 미움과 의심을 계속 가지
게 된다면 결국 너희들 자신의 손해라는 것.....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이 학교에 오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 다니실 정도로 학교를 위해 헌신하
시고 많이 애쓰시고 있다는 것 ...’

그 부분은 아이들도 이미 많이 좋아진 학교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상황을 덮어버리기엔 너무나 역부족
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20년이 지나고 이 일을
떠올린다면.....

질서의 위반 그것이었다

11. 현재

이 일이 있은 뒤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나오면 자기들끼리 의
심부터 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야!! 이런 적 없지 않아?” 우리가 언제 이랬어!! 거짓말 하네!”

“웃긴다 정말~~~”

“이거 또 뇌물 먹인 거 아니야?”

“아냐 협박했겠지....”

끝으로.....

만일 그 한 아이가.....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학부모도, 교장, 교감도 아닌,
연구부장, 교무부장도 아닌, 그 한 아이가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
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1년이 지나도 아니 10년이 지나도 모를 뻔한.....
제자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동료교사와 학교에게 속고 1년을 마쳤다면, 아니
비밀은 없으니 올 가을쯤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너무나
두렵고, 상상조차 끔찍합니다.

제가 4월 1일 보건휴가를 쓰면서 “혹시나”하고 10%의 의심을 했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마했지만 그런 일들을 벌리고도 남을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몇 달이 지났어도 제가 자리를 비우면 똑같은 일을 감행했을 사람들입니다.

제가 속은 것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맘을 사탕과 초콜
렛으로 살 수 있었다고 착각했던, 것에 아이들 스스로 분노했고, 그 아이들
은 이젠 어른들을, 학교를 믿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
리려 했던 어리석음에 분노가 치밀 뿐입니다.

경향신문의 기사보도 그리고 그 이후.. 학부모들이 이 모든 사태의 책임
자이다??

경향신문에 기사가 실리고 나서 학교가 한바탕 또 뒤집어졌습니다. 기사가
난 날 직원들을 모두 소집해서, 담임인 저에 대한 인신공격과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들을 늘어놓으며, 공격을 퍼부어 댔습니다. 질서를 어긴 장본인이
라고....

바로 다음날 또 우리반 학부모들을 소집하여 ‘뭔가 결정할 것이 있으니 학부모 임원들은 꼭 학교에 나와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담임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말입니다.

결국 참석한 12명의 어머니들 앞에서 학교 측과 저는 기나긴 논쟁을 하여야 했습니다. 2시간여의 논쟁 끝에 수업 때문에 교실로 향한 뒤, 학교 측에서는 이 일이 학부모님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싸인을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엄마들이 시험을 다시 치루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보낸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미 아이들의 상처로 인해 마음이 많이 돌아선 어머니들은 끝내 싸인을 하지 않았고, 사태는 일단 겉으로 조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질서...질서...차라리 학교는 군대이고 싶다.....장학사의 수업 중 조사 요구

4월 21일(월) 이례적으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월요 운동장조회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시 우리 반 아이들을 공격할까봐 노심초사 좌불안석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계속 마이크에 대고 ‘삼릉어린이 여러분...오늘 운동장조회 나와서 이렇게 줄을 잘 맞추어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서있는 것을 보니 참 보기 좋습니다. 질서는 이렇듯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질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몇몇 사람이 단체생활에서 질서를 어긴다면 학교는 혼란해지고,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질서는...’ 계속 반복되는 <질서>라는 말속의 숨은 의미를 아이들이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4월 25일 11시 30분쯤 교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전교조민원이 들어와서 5-2반 아이들 16명(시험을 끌려가서 친 아이들)을 1시에 과학실에서 따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교감선생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 선생님?’이라고 물었고, 저는 ‘교감선생님이 더 답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하였습니다. 이미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2개월 전의 일

을 다시 상기시키고, 생각하게 하여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는 자들인지, 분노가 일었습니다. 장학사라는 사람이 5교시 수업중에 또 16명의 아이들만 빼가서 무엇을 침묵시키고, 대답을 강요하려는지, 정말 구토가 일 지경이었습니다.

전교조에 이 사실을 보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교감님께 전하자, 제발 그러지 말라며 사정을 하러 교실로 달려오더군요...

BBK고 뭐고, 도덕성 필요없대매? 경제만 살리면 되고, 영어만 잘 하면 되지...교육도 마찬가지여....

이명박 강점시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이같은 경제논리로, 성과 중심주의로, 아이들에게 폭력을 자행하고도 버젓이 ‘교육자’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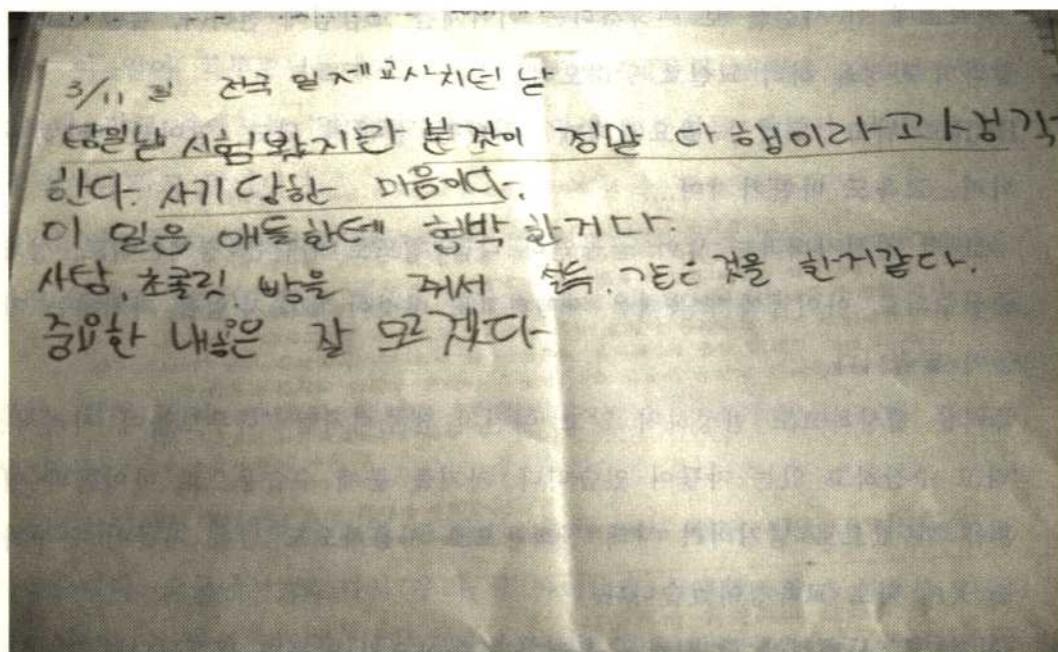
폭력을 행사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앵무새처럼 ‘학부모들이 시켜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문제 수습용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껌 값으로 넘겨버려 사태 진화용으로 사용하고도 남을 자들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교육청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시간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아이들과 담임교사의 사이를 이간질시켜 갈라놓는 것도 모자라, 이젠 학부모들을 이용하다 안되니, 오히려 책임을 젊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질서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억압하여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 스스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주체로서의 어린이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것은 절대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군인이 아니라 알록달록 다른 색깔을 지닌 아이들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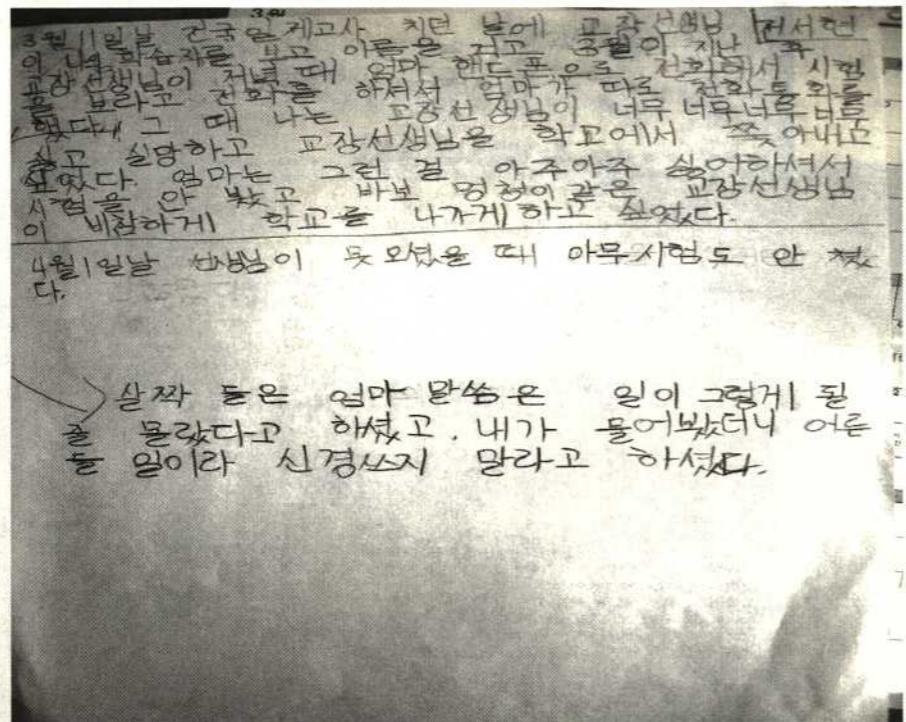
-----사기 당한 기분.....

3/11 월 겨울제고자 치던 날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느꼈던 것, 살피한 것, 풍자 있던 것, 잡에서 있던 일
그날은 보지 않았다. 특히 그때까진 느낀 것은 많았다.
5시45분

4/1 월 선생님 못 와는 날

그날 오자마자 그날 애로 온 선생님이 나를 보고 고마워 가라고 하셨다. 거기에는
나 말고도 5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6명이서 과학실에 가서
교장선생님과 3중선생님과 선생님 몇 명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데 기억이 안났다.
하여튼 우리는 거기서 일제과를 1교시~3교시까지 치고 교장선생님이 말을
하면 선생님이 세운해야될 것이라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마도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으셔 나에게 사업을 보도록 하라고 하셨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비참하게 학교를 나가게 하고.....



아동학대로 본 아동인권 사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유수경 사회복지사

본 토론회에 참석을 권유받았을 때 본 사회복지사는 많은 고민을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지금은 역할로 인해 중·고등학생을 만나는 횟수도 그 전에 비해 줄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토론회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실제 아동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적합하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회 담당 선생님께서 중·고등학생을 상담하면서 그 원인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중·고등학생은 문제행동은 초등학교 때이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다고 했다. 이 점이 토론회 장까지 이끌었던 것 같다. 본 사회복지사는 본 토론회에서 논지에 얼마큼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난 두 명의 학생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 학생들은 현재는 중학생이지만, 초등학교 이전부터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으며, 그들을 만난 뒤 사회복지관 역할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볼 때마다 제도와 사회복지사로서 돋는 역할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년시절이나 학교를 다녔을 때 모습을 잠깐 떠올려 보자. 분명 맞은 경험, 욕설을 들은 기억이 한 두 번은 있을 것이다. 실제 며칠 전 모임에서 학교 때의 추억을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들 그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본 경험담, 구타, 욕설 등이 일상이었다고 했다. 우리에게는 분명 고마운 선생이 있지만,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추억이라고 하게엔 가혹해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아동인권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학대라고 생각한다.

본 사례는 지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례 관리한 클라이언트이다. 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에 '밀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는 느낌이 자주 들었다.

I 사례개요 1

1. 대상자 정보

이름	김태희(가명)	성별	여
학교·학년·반	○○중 3학년 6반	생년월일	93.○.○
주소	서울시 금천구 ○○동 × -××	연락처	010-4870-××
취미	그림그리기	종교	기독교

2. 가족사항

이름	관계	나이	직업	연락처	건강상태	동거여부	비고
김민종	부	1950.×.××	택시운전	011-++++++ ++	양호	×	
○○○	모				- ct가 3세 때 가출 - 2002년 경 이혼	×	

3. 가계도&생태도(별첨자료 참고)

4. 의뢰경로

2006년 7월경 ○○중학교 심○○ 상담부장에 의해 의뢰됨. 말수가 거의 없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몸을 씻지 않아 냄새가 심함. 체형은 매우 말랐으며(키, 몸무게), 미술에 관심이 많은 편임(노트나 스케치북에 순정만화 같은 그림을 자주 그림)

5. 주변 사정

구분	사정내용
CT의 욕구	1) 경제적 문제 해결(용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2)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3) 방이 2칸 있으며, 학교 근처로 이사하고 싶다
가정환경	1) 부모이혼(ct가 3세에 가출) 후 조모와 부가 함께 거주. 이후 조모의 사망으로 부와만 거주 2) 다세대 주택의 1층, 방1(약 4평), 주방 1, 공동화장실로 구성되어있으며, 방이 매우 습하여 곰팡이가 많음. 욕실이 없어 씻는데 불편함.
학교생활	1) 말수가 거의 없으며, 몸에서 악취로 친구들과 거의 어울리지 못함. 2) 특수반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어울릴 때는 이야기를 주도하는 편
CT의 강점	1) 약속을 잘 지킨다. 2)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W'er가 본 CT의 주요문제	1) 위생문제(치아, 머리, 몸) 2) 경제적 어려움(밀린 월세, 핸드폰 요금, 끊긴 가스 등) 3) 학습능력이 매우 떨어짐. 4) 사회성이 매우 낮음.

4. 개입목적 및 목표

학생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ct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고,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해 가정내 안정을 추구하여 학교 적응력을 돋는다.

목표 1. 정서적 지지를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 ▶ 하위목표 1. 수시 개별상담을 통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나가도록 돋는다.
- ▶ 하위목표 2. 방과후 시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공부방 이용)
- ▶ 하위목표 3. 교우관계형성을 통해 자존감·사회성을 향상시킨다(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돋는다).

목표 2. 위생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돋는다.

- ▶ 하위목표 1. 치아관리(양치습관), 머리위생관리(매일 머리감기), 목욕관리(일주일에 한번 목욕하기 또는 샤워하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돋는다.
- ▶ 하위목표 2. 자원봉사자와 정기적으로 함께 목욕탕에 다니며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월 1회 목욕탕가기)

목표 3. 경제적 어려움을 돋는다.

- ▶ 하위목표 1. 가전제품들을 후원한다.(텔레비전)
- ▶ 하위목표 2. 김장김치를 지원한다.(년 1회)
- ▶ 하위목표 3. 학습교재를 지원한다.(년 1회)
- ▶ 하위목표 4.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여 후원금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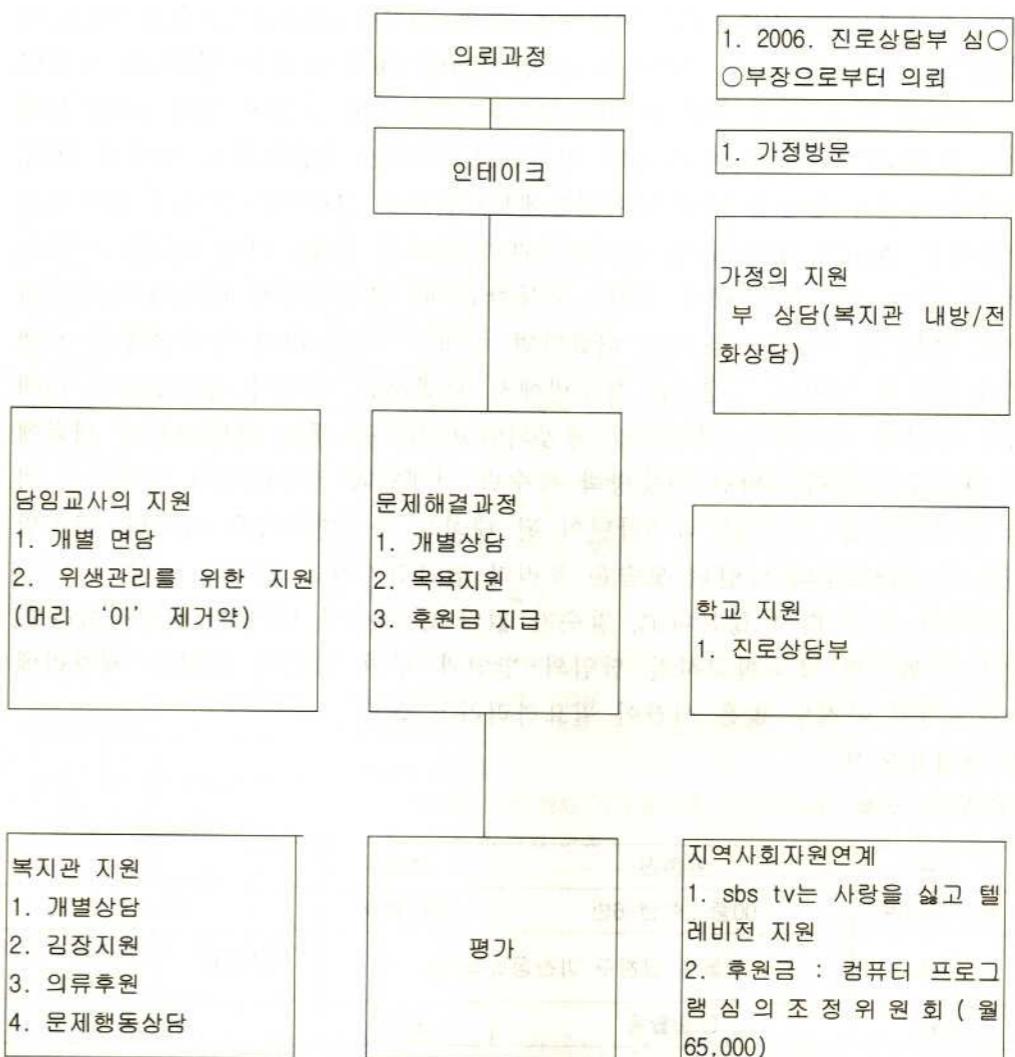
II 사례관리

1. 개입계획

목표	서비스내용	outcome	서비스				
			형태	제공자	횟수	시간	일정
정서적 활동을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	수시개별상담	정서적지지 학교 생활 만족도	상담	담당자	주 1회	상 담 시 간	2006.7~ 현재
	방과후 활동	여가시간 활용 학습활동 교우활동	공부방 이용	담당자/ 금천청소년 수 련관/ 교회 방과후교 실 참여	수시	방과후	
	친구 사귈 수 있도록 상담	자존감·사회성을 향상	상담		수시	상 담 시 간	
위생문제	치아 관리, 머리 관리, 몸 관리	직접지도 자원봉사자	담당자	주 1회 월 1회	방과후		
경제적 어려움 해결	가전제품	-	후원	담당자	-		
	김장김치	-	후원	담당자	년 1회	년말	
	학습교재	-	후원	담당자	년 1회	년초	
	결연후원금	-	후원	담당자	월 1회	매월	

2. 개입과정 & 개입내용

1) 흐름도



III 아동인권측면에서 본 문제

본 ct 태희는 ○○중학교 특수반이다. 하지만 1년 이상 태희를 만나면서 느끼는 건 절대 특수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알아보고자 상담할 때 담임교사와 초등학교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말수가 매우 적은 태희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담임교사(초등학교시절 담임교사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음)가 특수반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아버지 역시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중학교에 입학을 시켰다.(거주지역은 특수반이 없기 때문) 태희는 학습에 관심이 없어 성적이 나쁜 건 사실이나, 지능적인 문제라고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지적장애가 아닌 정서장애(사회성 결여)로 보였다. 어릴 적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태희는 그 뒤로 조모와 부 밑

에서 성장했으며, 조모 사망 뒤부터는 거의 방치된 생활을 했다고 본다. 가정방문을 했을 때 집은 깨끗하나 부가 자녀에 대한 관심은 방임 그 자체였다. 자신의 딸의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았고(머리에 이와 서케가 가득하고, 치아는 칫솔질해도 닦이지 않고, 몸에서 악취와 앙상한 뼈만 남아있음에도) 겉으로 그러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친구들과 소통하지 못함, 가출, 도벽, 거짓말, 방 한 칸에 아버지와 함께 생활).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가 태희가 특수반이라고 했을 때 한번쯤 검사를 해봤다면 중학교 시절 내내 특수반에서 보낼 일이 없었을 것이다. 2년을 특수반에서 보냈지만, 다행이 상담부장의 눈에 띠어 상담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학년 때는 담임교사가 태희에게 관심을 두었다. 2학년 겨울방학 특수반 선생님과 특수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정서(?)를 쓰고 난 뒤 3학년이 된 태희는 특수반소속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로부터 낙인된 모습은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에서 눈에 띠지 않는다고, 말수가 없다고, 학습이 낫다고, 내성적이라고, 잘못된 판단과 초등학교시절 담임의 방임과 부의 방임이 태희를 제자리에 돌려놓기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I 사례개요 2

1. 대상자 정보

이름	윤현진	성별	여
학교·학년·반	00중 2학년 6반	생년월일	93.0.0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연락처	010-〇〇〇-☆ ☆
취미	미술활동	종교	기독교

2. 가족사항

이름	관계	나이	직업	연락처	건강상태	동거여부	비고
김소영	모	71.〇.〇	주부	837-〇〇	×	○	정신이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하나 거부상태
윤현미	동생	97.〇.〇	초4	010-〇〇-〇〇〇	○	○	동생과 자주 싸움
정경님	조모	40.〇.〇5			△	×	

3. 가계도&생태도 (별첨자료참고)

4. 의뢰경로

2006.10.24 또래상담훈련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또래상담 훈련당시

에는 클라이언트의 가정환경을 알지 못했다가 2007. 4.10 참고서를 후원하면서 가정환경관련 조사를 하게 되었다.

5. 사정

구분	사정내용
CT의 욕구	1) 모의 치료 2) 경제적 지원
가정환경	부의 가출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권자 신청도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함. - 모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 - 방 1칸에서 모, 두 딸과 애완동물(개, 고양이)이 함께 거주 - ct가 모를 싫어하고 있으며, 자신이 컴퓨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컴퓨터를 방 가운데 설치함.
학교생활	1) 상담실 지킴이 활동 2)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 3) 주요과목보다는 예체능과목에 관심이 있고, 손재능이 많아 고등학교 진로를 미용고생각하고 있음
CT의 강점	1) 미술활동- 그리기, 만들기에 소질이 있음.
W'er 가 본 CT(ct의 가정)의 주요문제	1) 경제적 어려움 2) 모의 자녀에 대한 방임(자녀에 대한 관심, 교육, 생활규칙관리 소홀) 3)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4. 개입목적 및 목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ct의 가족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가정내 안정을 추구한다.

- 목표1. 정서적 지지를 통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응집력을 높인다.
 - ▶ 하위목표 1. ct의 가족을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가족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가족의 응집력을 높인다.(가족에 대한 친밀도 향상)
 - ▶ 하위목표 2. 방과후 시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현진:과외지도, 현미:공부방이용)
 - ▶ 하위목표 3.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킨다(원만한 교우 관계 및 사회성 훈련).
 - ▶ 하위목표 4.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하여 가정을 관리한다.(모의 정신치료)

목표 2. 경제적 어려움을 돋는다.

- ▶ 하위목표 1. 석식을 지원한다.(윤현진, 윤현미)
- ▶ 하위목표 2. 김장김치를 지원한다.(년 1회)
- ▶ 하위목표 3. 학습교재를 지원한다.(년 1회)
- ▶ 하위목표 4.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여 후원금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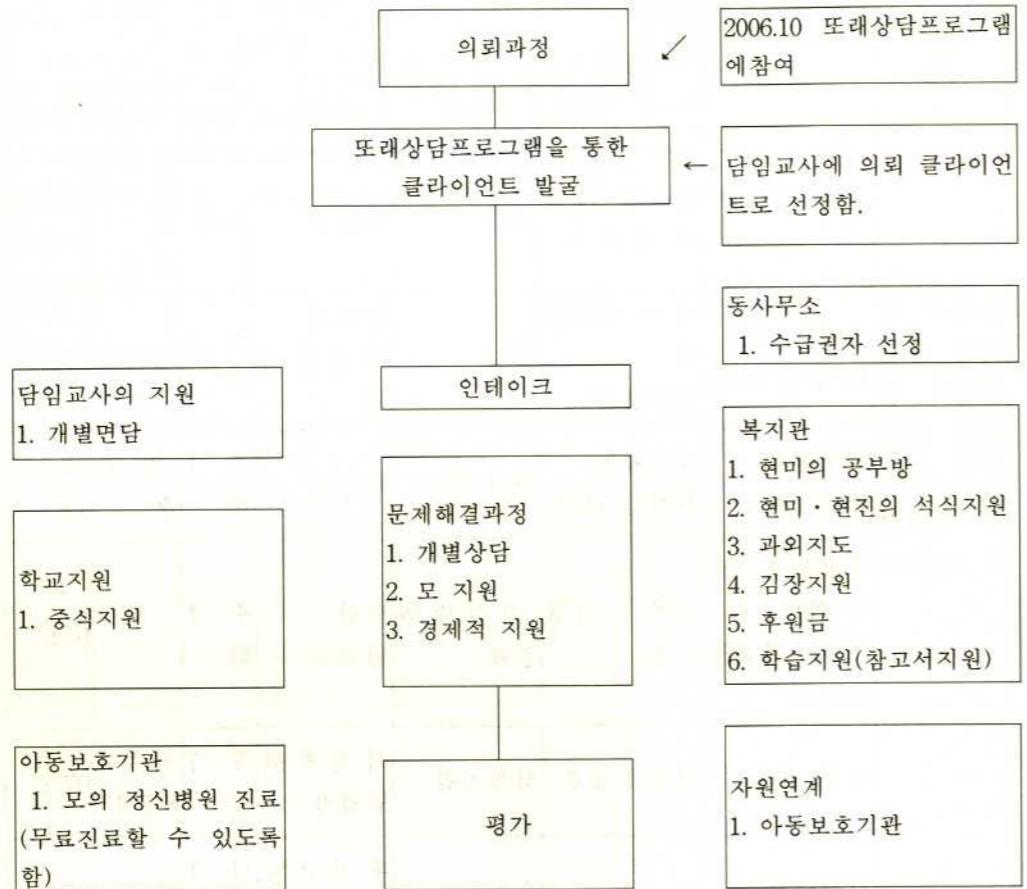
II 사례관리

1. 개입계획

구분	내용	목표	서비스				
			형태	제공자	횟수	시간	일정
정서적 지지를 통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응집력을 높인다.	상담	가족의 응집력 향상	상담	담당자	수시	점심시간 수시	2006.10~현재
	방과후 지도 (공부방/파외)	여가시간 활용 학습활동	상담	담당자 자원봉사자	주 1회	방과후	07.5~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우활동 사회성 향상	집단 상담	담당자	주 1회	방과후 12	06.10~
	아동보호기관과 협력 (모의 정신치료)	모의 가정 양육	정신병원 치료	병원 담당자	주 1회		07.5~
경제적 어려움을 돋는다	석식 지원	경제적 도움	석식지원	석식지원 담당자	주 7일 저녁 6~7시		07.5~
	김장김치	"	후원	후원 담당자, 담당자	년 1회	11월 말	07.11
	학습교재	"	후원	"	년 1회	학기초	07.4
	후원금	"	후원	"	월 1회		-

3. 개입과정

1) 흐름도



2) 개입진행과정

구분	내용	06.10	06.12	07.4	07.5	07.6	07.7	07.현재	비고
정서적 지지를 통한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수시 개별상담 방과후 지도 또래상담 프로그램			●	●	●	●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의 정신치료 동생(윤현미)의 공부방				●	●	●	●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다	석식 지원 김장김치 학습교재 후원금 과외지도			●			●	●	

III 아동인권측면에서 본 문제

현진이는 상담실에서 운영하는 또래상담반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학습지원을 통해 클라이언트로 선정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모자가정일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담을 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가진 가정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세대가 수급권자 선정이 안 된 것은 모가 경제활동을 하기 싫어하고 조모에게 의지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상담과정 중에 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시선(동네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자신을 쳐다보면)이나 신고(자녀를 폭행하는 장면으로 주민의 민원)가 들어오면 잣은 이사를 하였다. 조모 역시 자신의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면서 수급권자가 되길 원했다. 가정 내역을 알면서 부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음과 모가 정신질환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을 동사무로에 신고함으로 수급권자 선정이 되었다. 그런 후 두 딸에 대한 서비스가 들어갔다. 둘째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잣은 가출과 외박 등교거부(유급당할 처지)가 드러나 있으나 모는 이를 방치하고 있었고, 첫째 딸(현진)은 학교와 교회만 다녔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밤10시~12시까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귀가하곤 했다. 오히려 모가 자신의 딸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아동보호기관에 아동학대로 모를 신고하였고 이때부터 모는 정신과 병원(보건소 집중관리 대상, 무료진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첫째 딸은 본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였고 둘째 딸은 다른 사회복지사가 맡았다. 둘째 딸을 학교를 오랫동안 가지 않아 학교 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담당 복지사가 함께 학교에 가고 복지관 공부방에 이용하는 같은 학교 친구들을 소개시켜주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딸은 학교를 다니고, 복지관 공부방 이용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 그 한 달여 과정 끝에 학교에 결석하지 않기 시작했고 공부방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여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첫째 딸이었다. 첫째 딸은 자존심이 강한 학생으로 자신의 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 거부와 이 사실이

학교에 들어날까 고민하였고, 자신의 가정이 그렇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까봐 부담스러워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주는 서비스에 대해 모두 거부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철저한 비밀이 중요했다. 오랫동안 상담과정을 거쳐 현재 첫째 딸은 복지관에서 과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둘째 딸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복지관이 공부방 사업을 담고 지역아동센터로 아동을 보냄). 수급권자 지정으로 경제적인 안정도 찾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버지의 행방을 찾았는데 아버지는 부랑아 생활을 하던 중에 사망하였고 모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모의 자녀에 방임으로 인해 두 딸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받아야 보호와 인권을 박탈당한 채 생활하였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다.

학교 자율화 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변호사 김수정

1. 학교 자율화 발표에 대한 문제제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정부의 4. 15. 학교 자율화 계획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 지고 있는 사설학원의 방과 후 학교 참여 허용, 비록 반대여론에 밀려 계속 불허방침을 유지 하긴 하였지만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등은 모두 아동의 인권에 심대한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정부의 조치의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국제인권법(아동인권을 중심으로)의 국내법적 효력

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비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은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1989. 11.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 9. 2. 위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1991. 11. 20. 우리나라는 '자녀의 부모와의 면접교섭권, 입양허가, 전시 아동의 상소권 보장'등 3개 조항에 대해 국내 법 조항과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유보하고 위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라는 점에서 아동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2005.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2개국이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준을 받은 국제인권법이다.

이 협약에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 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 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협약 이행상황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후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고 아동권리 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은 아동권리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다. 아동권리 협약의 내용(아동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받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

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 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계발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제26차회기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일반논평1: 교육의 목적

제29조1항의 중요성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1항은 매우 광범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당사국에 의해 합의된 바 있는 교육의 목적은 동 협약의 핵심적인 가치인 모든 아동에게 부여된 천부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아동의 평등 및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려 한다. 제29조 1항 이하의 5개 목록에 나타난 이러한 목적들은 모두 아동의 특별한 발전의 필요와 발전해나갈 다양한 잠재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시키도록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동 목적들은 인권에 대한 존중(제29조 1항 b) 및 발달된 주체성과 인지능력(제29조 1항 c)의 진전과 아동의 사회화와 타인(제29조 1항 d) 및 환경(제29조 1항 e)과의 상호 작용의 진전을 포함한 아동의 모든 잠재력의 전체적인 발전(제29조 1항 a)이다.

2. 제29조 1항은 제28조에서 인정된 교육에 대한 권리에 아동 고유의 존엄성과 권리를 반영하는 양적인 차이를 단순히 부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동 중심적이고 아동 우호적이며 자격을 갖춘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동 조항이 선언하고 있는 원칙에 기초한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 모든 아동의 권리인 교육은 아동에게 삶의 기술을 제공하고, 모든 범위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능력을 강화시키며, 적절한 인권 가치에 의해 고무된 문화를 전통시키도록 고안된 것이다. 목적은 아동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다른 능력, 인간의 존엄성, 자부심과 자신감을 전진시킴으로써 아동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교육”은 형식적인 취학을 넘어서서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 및 개인적, 집단적으로 아동이 그들의 개성과 재능,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학습과정을 아우르는 것이다.

3.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단순한 접근의 문제(제28조)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이다. 제29조 1항 상의 가치에 확고히 근거하고 있는 내용을 함유한 교육은 모든 아동들에게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세계화와 신기술 그리고 관련된 현상에 의한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에 접하게 될 도전들에 관한 균형잡힌, 인권 우호적인 대책을 얻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다. 상기의 도전들은 전 세계와 지역, 개인과 집단, 전통과 현대, 장기적 고려와 단기적 고려, 경쟁과 기회의 균등, 지식의 확장과 그것을 흡수하는 능력,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² 상호간의 긴장을 포함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29조 1항의 요소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교육계획과 교육에 대한 정책들은 모두 많은 요소들을 간파하거나, 표면적인 사후대책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제29조 1항은 모든 당사국이 교육이 광범위한 가치와 관련되어야 함에 동의하였다 고 선언하고 있다. 동 합의는 세계 각지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 국가, 문화적인 경계를 초월한다. 일견 제29조 1항에서 언급된 다양한 가치들 중 일부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1항 d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1항 c에 의거하여 아동의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 가치, 아동이 출생하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민족적 가치, 아동의 고유한 문명과 다른 문명에 대한 존중의 전선을 위해 고안된 정책들과 항상 자동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 규정의 중요성 중 일부는 바로 차이에 대한 존중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키도록 하는 것과 교육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나아가, 아동들은 역사적으로 분리되었던 집단 간의 많은 차이를 극복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1항의 기능

5. 제29조 1항은 교육이 달성해야만 하는 다른 목적들의 목록 또는 열거 이상의 의미

를 지니고 있다. 동 협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6. 첫째, 동 조항은 동 협약의 규정간의 상호 불가결하고 상호 연관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른 규정들의 다양성의 강화, 통합, 보완을 강조하며, 규정간의 분리를 통해서는 적절히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동 협약의 일반원칙인 비차별(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 생명, 생존, 개발에 관한 권리(제6조), 견해를 표현할 권리 및 그에 대한 고려(제12조)에 추가하여 부모의 책임과 권리(제5조, 제18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의 자유(제14조), 정보에 대한 권리(제17조), 장애아동의 권리(제23조), 보건교육에 대한 권리(제24조), 교육에 대한 권리(제28조) 및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의 언어적, 문화적 권리(제30조)와 상기 규정에 국한되지 않는 많은 다른 규정들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7. 아동의 권리는 전체 맥락과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29조 1항과 동 협약의 전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광범위한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동 협약에 대한 행해진 비판 중 다수에 대해 특히 동 규정에 의해 반박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동 조항은 부모에 대한 존경, 그들의 넓은 윤리적, 도덕적, 정신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틀 내에서의 권리를 볼 필요성 및 대부분의 아동의 권리가,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가치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 둘째, 동 조항은 교육에 대한 권리의 증진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다른 권리의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 과정에서 전달된 가치에 의해 강화되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교육학 상의 방법과 가정, 학교 혹은 기타 어느 곳이건 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포함된다.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교육은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며, 제12조 1항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학교생활에 참여하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교육은 또한 제28조 2항에 반영된 정계에의 엄격한 제한을 존중하고 교내에서의 비폭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본 위원회는 육체적 처벌의 사용이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정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님을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제29조 1항상 인정된 가치의 준수는 학교가 용어상의 모든 의미에서 아동 우호적이어야 하며 존엄성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견지해야 함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의 아동의 참여, 학교 공동체와 학생 위원회의 형성, 동료 교육과 동료 상담, 그리고 교내 징계절차에의 아동의 참여는 권리 실현의 경험과 학습의 과정의 일부로서 증진되어야만 한다.

9. 셋째, 비록 제28조가 교육제체의 확립과 학교로의 접근보장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제29조 1항은 교육의 특정한 품질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 권리의 근거가 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동 협약과 부합하기 위해, 동 조항은 모든 아동이 특유의 성격과 관심, 능력과 학습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 개인의 개성, 재능, 능력의 발달을 교육의 핵심 목표로 삼는 아동 중심적 교육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³ 따라서 교과과정은 아동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맥락 및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만 하며, 아동이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전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하며 교수 방법은 아동의 각각의 필요에 맞추어 준비되어야만 한다. 교육은 반드시 모든 아동의 필수적인 삶의 기술에 대한 학습에 대한 보장 및 어떠한 아동도 삶에서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해야만 한다. 기초적인 기술은 식자능력과 수리능력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균형 잡힌 결정을 할 능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능력 건강한 생활방식,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와 책임감, 비판적 사고, 창조적 재능 및 삶에 있어서 자신들의 선택을 추구해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 다른 능력들을 개발할 능력을 포함한다.

10. 동 협약 제2조상에 열거된 여하한 이유에 근거한 차별은 그것이 가시적인 것인 듯, 그렇지 않은 간에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의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을 훼손하거나 심지어는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의 기회로의 아동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동 협약 제28조과 관련된 문제이며 제29조 1항에 포함된 원칙들에 대한 준수의 실패를 가져오는 많은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성차별은 양성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과정과 같은 관행, 소녀에게 제공된 교육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는 조치, 소녀의 참여를 제한하는 안전하지 않거나 비우호적인 환경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역시 많은 제도적인 교육 체제와 가정을 포함한 다수의 비제도적인 교육환경에 스며들어 있다.⁴ HIV/AIDS에 감염된 아동들 또한 상기의 두 환경에서 모두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⁵ 모든 이러한 차별적 관행들은 교육이 아동의 개성,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잠재성의 최대한의 개발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제29조 1항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상충한다.

11. 본 위원회는 또한 제29조 1항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한 극복노력과의 관계를 강조하려 한다. 인종주의 및 이와 관련된 현상은 무지, 타인종, 민족, 종교, 문화적, 언어적 또는 다른 형태의 차이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 편견의 촉진, 혹은 왜곡된 가치의 보급이나 그에 대한 교육이 있는 곳에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은 인종주의 및 이와 관련된 현상의 해악에 대한 모든 캠페인에서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특히 특정한 사회에서 나타나거나 나타났었던 인종주의, 그리고 역사상 실현되었던 인종주의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인종주의자들의 행위는 “타인”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과 아동의 권리와 비차별의 원칙을 가르칠 때에 아동이 속한 그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교육은 인종주의, 민족 차별, 외국인 혐오 및 기타 관련된 불관용의 제거와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12. 넷째, 제29조 1항은 교육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감성적 측면의 증진과 아동기와 일생이라는 시기의 측면에서 지적, 사회적 그리고 실질적 가치 간에 적절한 균형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에 대하여 전체적인 접근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전반적인 목적은 아동의 능력과 자유로운 사회 내에서 아동이 완전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지식의 축적, 경쟁의 촉진 및 아동에 대한 과도한 업무의 부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의 형태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의 최대한의 발현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교육은 아동 우호적이어야만 하며 아동 개개인을 고무하고 격려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학교당국은 인도적 환경을 육성하고, 아동이 그들의 발달 능력에 따라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13. 다섯째, 동 조항은 교육이 본 협약에 내재된 특정한 윤리적 가치의 범위를 증진시키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안되며,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에 의한 평화, 관용에 대한 교육 및 자연 환경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이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제29조 1항의 가치의 증진과 강화는 모든 곳의 문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한 그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교육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공동체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의 존중이라는 개념의 발달을 위해 교육은 환경의 문제와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및 인구통계적인 문제들을 수반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문제를 연관시켜야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은 가정, 학교, 공동체 내에서 교육되고, 국내적, 국제적 문제를 아우르는 것이어야만 하며, 아동이 지역적, 광역적, 세계적 환경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14. 여섯째, 동 조항은 모든 다른 인권의 증진과 그들의 개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 기회부여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 자유로운 사회 내에서 완전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아동의 능력은 교육에 대한 접근의 완전한 거부에 의해 손

상되고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항에서 인정된 가치의 이해를 증진하지 못함으로써 손상되고 훼손될 수 있다.

인권교육

15. 제29조 1항은 또한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요청되었으며 다른 국제기구들에 의해 촉진된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초석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활동에서 아동의 권리의 중요성이 항상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인권교육은 인권조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더구나 아동들은 가정, 학교 혹은 사회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인권의 기준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인권을 학습해야만 한다. 인권교육은 종합적인 인생전반에 걸친 과정이어야만 하며 일상과 아동의 경험 속에서 인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한다.⁶

16. 제29조 1항에 내재된 가치들은 평화로운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관련되어 있으나 동 가치들은 분쟁이나 비상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카르 행동 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에서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쟁, 자연재해, 불안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교육 체제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호 이해, 평화와 관용을 증진시키고, 폭력과 분쟁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⁷ 국제 인도법에 대한 교육 역시 거의 종종 무시되고 있으나 이는 제29조 1항의 실효성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일면을 구성한다.

이행 감독및검토

17. 동 조항에 반영된 목적과 가치는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되어있고 그것의 이행은 잠정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이른다. 이는 많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관련된 원칙들을 입법이나 행정명령(administrative directive)에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심지어는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정당하지 않다. 국내법이나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 이는 관련 원칙들이 존재하거나, 혹은 교육정책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이러한 원칙들을 그들의 교육 정책과 모든 수준에서의 법률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18. 제29조 1항의 실효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한 목적을 포함하는 교과과정의 기본적인 개편과 학교 정책 및 교과서 및 기타 교재, 교수법의 체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깊이 있는 변화 없이 현재의 체제에의 동 조항의 가치와 목적의 단순한 침가 이상이 아닌 접근은 분명히 적합하지 않다. 상기의 가치들을 가능한 한 전달하고, 증진시키며, 가르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이 상기 가치들의 중요성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면 관련된 가치들은 광범위한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그 과정에 편입될 수 없으며 여기에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제29조 1항 상에 반영된 원칙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임용전후의 훈련방법들은 교사, 교육행정요원 및 기타 아동 교육관련자들에게 필수적이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수방법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교육철학 및 정신과 제29조 1항에 나타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19. 더욱이 학교 환경은 그 자체가 제29조 1항 (b)와 (d)에서 요청되는 이해, 평화, 관용, 성 평등 및 모든 사람,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토착민들 간의 우호를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괴롭힘이나 다른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관행이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는 제29조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다. “인권 교육”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자주 그 함축적 의미가 극도로 단순화된 방식으로 사용된다. 형식적인 인권교육에 부가하여,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학교와 대학 내로 국한되지 않는 좀 더 넓은 사회에서의 인권에 공헌하는 정책과 가치의 증진이다.

20. 일반적인 경우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는 협약의 본문 그 자체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약 의무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 당사국들의 다양한 동기의 근거가 불충분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의 보호자이자 촉진자로서의 아동의 역할을 또한 촉진할 것이다.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서 당사국들은 그들이

상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인권고등판무실에서 는 동 협약에 대한 다양한 언어판본 등의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21.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언론매체 또한 제29조 1항에 반영된 가치와 목적을 증진시키 고, 그들의 행동이 그러한 목적을 증진시키려는 타인의 노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보 장한다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정부들은 동 협약 제17조 1항에 따라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익에 되는 사항과 경 보를 보급하도록 장려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내용으로 한다.⁸

22.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역동적인 과정으로서의 교육 및 제29조 1항에 관련되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는데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모든 아동은 학습 환경, 교수과정, 학습과정과 교재 및 학습결과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본 위원회는 과정에 참여하는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재학 중이 아닌 아동, 교사 및 젊은 지도자, 부모 그리고 교육행정가 및 장학사들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의 관점을 고려하고, 이에 근 거하여 점진적 발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조사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회는 아동, 부모와 교사가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참여를 보장하도록 국가적 차원의 감독을 강조하는 바이다.

23.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포괄적인 국가적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제29조 1항 상에 열거된 목적의 실현을 증진시키고 감독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그러한 계획이 아동, 국가적 인권 행동 계획, 혹은 국가적 인권교육 정책의 보다 큰 맥락에서 고안된다면 정부는 제29조 1항에서 다루어진 모든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고안되도록 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유엔과 교육정책 및 인권교육에 관여하는 기타 국제기구들이 제29조 1항의 이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24. 동 조항에 반영된 가치를 증진시킬 프로그램의 이행과 고안은 인권위반의 유형이 일어난 거의 모든 상황에 있는 정부의 제출해야 하는 표준적 반응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제18조 이하에 포함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비관용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일반적으로는 동 협약 상에,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제29조 1항에서 반영하고 있는 가치의 증진을 위해 수행해야 할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당연히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동 협약 상 인정된 권리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교육학적 기술들에 대한 연구와 이의 채택을 포함하는 적절한 부가 조치가 채택되어야만 한다.

25. 당사국들은 또한 현존하는 정책이나 관행이 제29조 1항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고발(complaint)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검토 절차를 설립하도록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한 검토 절차는 반드시 새로운 법적, 행정적 혹은 교육기구의 창설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토 절차는 국내 인권 기관이나 현재의 행정기구에 위탁될 수도 있다. 본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동 조항에 대한 보고시에, 동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되는 현재의 접근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진정한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밝힐 것을 요청한다. 국가가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해 보고 기간 내에 그러한 검토가 어떻게 착수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검토가 수행되어왔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6. 제29조 1항에 관한 당사국 보고서의 심의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보고가 사실과 차이점을 지적해야만 한다는 제44조의 요구에 따라, 본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각 당사국은 동 규정에 반영된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 요구되며, 명시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진행될 행동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이 요구된다.

27. 본 위원회는 본 협약의 제45조에서 역할이 강조된 유엔기구와 기관들 및 기타 동

등한 기구들이 제29조 1항과 관련된 동 위원회의 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8. 제29조 1항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국가적 행동계획의 이행은 제4조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자원의 제한이 당사국들에게 요구되는 조치의 여하한 정도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동 협약의 제4조와 제45조)와 교육과 관련된 측면에서(제28조 3항) 국제적 협력의 증진과 측진의무가 당사국에게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위원회는 개발 협력을 제공하는 당사국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이 제29조 1항에 포함된 원칙들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고안되었음을 보장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2차 회기에서 2003. 1. 15. 위 협약 비준국으로서 협약 제44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같은 달 31.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선택하고, 이를 권고 했다. 대한민국은 위 협약 비준국으로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의 최종 견해

3. 일반 원칙

(협약 2, 3, 6, 12조)

29. 위원회는 협약에 규정된 일반원칙, 차별받지 않을 권리(2조), 아동이익최상의 원칙(3조), 생명·생존 및 발전의 권리(6조),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가 존중받을 권리(12조)가 한국 정부의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우려한다.

34.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 기관과 전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35. 위원회는 협약 12조에 따라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재개정하라. 그리고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징계과정에 의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 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의견 청취와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7. 교육

(협약 28, 29, 31조)

52. 위원회는 정부가 중등교육을 무상화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정보를 환영하지만, 대한민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을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초등교육에서는 여아와 남아의 입학비율에 차이가 없지만 고등교육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수가 적어지는 점을 우려한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53.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a)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립학교에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공립학교의 질을 높여라.

b)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

을 개발하라.

c) 여아의 입학을 증진하고 끈질긴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응함으로써 고등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d)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

4.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학교 자율화 조치의 문제점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위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위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위 협약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국회는 위 협약에 반하지 않는 입법을 하고, 정부는 위 협약에 반하지 않는 나아가 위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정책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현 정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조치는 위 협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미 우리나라의 지난 경쟁적인 교육을 감소시키고, 위 협약 제29조 제1항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재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학교 자율화 조치는 오히려, 경쟁적인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위 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경쟁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는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 할 것이다.



학교자율화 조치는 인권유린 조치!

이수경(도깨비방망이 공부방)

지난 4월15일, '학교자율화'조치는 우리 공부방친구들이 밝고 푸른 신록의 4월을 채 즐기기도 전에 어두운 잿빛의 잔인한 4월을 만들고 말았다.

입시가 최고의 교육목표인가 되어 버린 현실교육을 경험한 터라 정부가 이제라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지방 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취지에는 크게 공감했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부유한 계층에 유리한 입시제도로만 왜곡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그 동안 또래아이들에게 많이 쳐지거나 부진한 공부방아이들을 보면서 학교가 좀 더 부진한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학교자율화'조치가 결코 교육의 가장 고유한 가치인 '참된 인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었다.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보충수업금지조항 폐지', '사설영리학원 학교 출입'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자율권이라는 이름아래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상류층들을 위한 입시경쟁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율화 조치 이전에도 공부방친구들에게는 학교교육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기초학습을 다지는데도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를 안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한글을 제대로 깨치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알림장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계속 학습부진이 누적되어 거의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도 있고, 한글을 깨쳤더라도 부모님이 가정에서 숙제를 돌보는 등 학습지원을 하

지 못해 학습부진이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상태가 되어 동네를 배회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한 부진이 반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는 요인이 되고,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그런 아이들이 자신의 반이 되는 것을 성가셔 하시는 경우를 보았다.

최소한 공교육기관에서는 뒤처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보듬어 갈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학습 뿐 아니라 아이들이 '나'와 '우리'를 균형있게 생각하고 움직일 줄 아는 자유로운 참된 인간성을 키워나가는 일에는 도무지 신경쓰지 않는 학교와 정부가 정말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최근 대한민국은 세계최고나 세계최초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만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이다. 한국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이야기를 보더라도 '최초의 우주인000'이라는 이름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과학의 힘으로 우주에 가기위해 밑으로부터 과학발전을 위해 애쓰기보다는 상징적인 가치를 위해서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듦다. 이번 학원자율화 조치도 세계적인 1명의 한국인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을 교육의 들러리로 만드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다.

우리아이들은 학교자율화 조치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그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라고 하니 좋은 제도 이겠거니 생각하실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없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지금 당장 먹고사는 일에 급급해 교육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통로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 시간을 할애를 여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학교에서는 잦은 재량휴일을 사용하고 있다. 중산층가정의 아이들은

다양한 현장체험과 부모님과의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지만 공부방아이들은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단기방학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 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현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부모님들이 실업자가 되어 함께 하기 전에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하여 아이들의 교육권이 제한되어서도 안 된다.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경쟁논리 속에 시장논리 속에 가두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금처럼 임시경쟁체제 속에 교육을 가둔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잿빛이 될 것이다. 아니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잿빛이 될 것이다.

